제1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1957년5월15일(단기4290년) 상오10시50분

의사일정

1. 제9회임시회제2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서울특별시국민반운영강화에관한반대건의안
4. 야시장철폐에관한긴급동의안
5.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소방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시립극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단기4290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수도비,시립극장비,전당포비,주택비,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제9회임시회제2차회의록통과 …… 2
2. 보고사항 …… 2
3. 서울특별시국민반운영강화에관한반대건의안 …… 16
4. 야시장철폐에관한긴급동의안 …… 41
5.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4

(10시 50분 개의)

○의장 김진용; 재석의원36인으로제10회임시회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전차회의록낭독

---

1. 제9회임시회제2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신용석;
(제9회임시회제2차회의록낭독)
○의장 김진용; 지금낭독한 제9회임시회제2차회의록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없읍니다」하는이있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였읍니다.
○의장 김진용; 제10회임시회 제1차회의록에 서명 의원을 말씀드립니다. 김수길의원 김항복의원 두분으로 지명합니다.
○의장 김진용; 보고사항입니다.

---

2. 보고사항

○간사장 신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보궐결과 통지의 건입니다. 본건은 5월8일실시한 종로제2 선거구 보궐선거 결과 문학우씨가 당선되였다는 5월9일자로 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있어서 보고합니다. 다음은 시의회의원 등록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문학우씨는 5월10일회의규칙 제1조제2항에 규정된 등록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제8회임시회 제3차회의에서 의결되어서 이송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3천9백만환이아니면 매득할수 없는관계로 수정의결에대한 재의를 요구하여왔읍니다. 그래서 오늘 각 의원에게 유인 배부해 드리고 이것을 재정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에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4월25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여서 오늘 각 의원에게 유인 배부해 드리고 이것은 건설위원회에 심의를 부탁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세조례중 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4월20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오늘 각 의원 여러분에게 유인 배부하여 드렸고 이를 내무 재정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계 조례안 재의및 답변요구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비용 변상조례안 재의요구의건 서울특별시립 학교 보건소 설치조례제정의건 서울특별시 성인학교 수강료 징수 조례 개정의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의건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수업료및 입학금 징수 조례안 개정의건 이상 5건의 교육위원회관계 의안이 4월1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오늘 각 의원에게유인 배부해 드렸고 이를 문교 재정 예산결산위원회에 각각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5월3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오늘 각 의원 여러분에게 유인 배부해 드렸고 이를 재정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 결과 통지의 건입니다.

제9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흥용극장 재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5월10일자시장으로부터 교육위원회 흥행장 설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허가만을 고려하기는 곤란하다는 처리 결과 통지가 있어서 이것을 보고하여 드

립니다.

다라서 교육위원회에서 오늘날까지 이 청원처리결과 통지가 아직 없읍니다.

그래서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짚차 구입에 관한 건입니다. 5월 10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금일 각 의원에게 유인배부해 드렸고 이것을 재정 건설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결과 통지의 건입니다. 제1회 정기회 제12차회의에서 채택해서 이송한 성북구 신당동 김문산외 236명으로 제출된 부흥주택 입주권 확인에 관한 청원은 현재 집행부의 보건사회부의 주택영단간에 사실을 조사중에 있다는 시장으로 부터의 통지가 있읍니다.

이것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 결과통지의 건입니다. 4월26일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청량리동 205번지 대지 대부청원은 보건부소관 부흥주택 건축용지로 책정되고 주택영단에 이관케 되었음으로 이는 청원인과 주택영단과의 직접교섭할 문제임으로 기이 청원인에게 사실을 해명통지하였다는 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왔읍니다.

그래서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 결과통지의 건입니다. 2월25일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용산구 한남동 10의54소재 시유지 대부청원은 이를 공매키로 채택하였음으로 대부가 불가능하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보고합니다. 다음은 중학교 졸업생으로서 동계 고등학교에 자율적 진학건의의 건입니다.

제9회임시회에서 관계당국의 건의키로 결의되어 4월18일자 건의안 본건에 대하여 4월27일자 교육감으로부터 현행법규상 불가능한것이며 부동중에 학생에대하여는 타 고등학교중 정

원미달교에 입학을 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회보가 있읍니다.

어기에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수익자 부과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5월14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회부탁요청이 있어서 오늘 각 의원에게 이것을 유인배부해 드렸고 이것을 건설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용; 다음은 문학우의원의인사전에 운영위원장 말씀 있으세요?

○김상흡 의원; 종로보궐선거에있어서 문학우씨가 당선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의장께서도 간사장이 여러분앞에 보고드렸읍니다마는 우리의원일동은 문학우씨 당선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가지 간단히 보고라는것 보다도 이 14날자로 기재된 평화신문에있는 그 기사 내용을 간단히 여러분앞에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치법에 있는바 일비 기타 비용으로서 하루에 그 신문에 보고된바와같이 2만환 내지 3만환 4만환까지 우리…….

○김동순 의원; 의석에서 신문에 그렇게 보도안되었어요.

(「그만둡시다」하는이있음)

○김상흡 의원; 계속

그것이 사실입니다. 요는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것을 그 내용에 있어서 3만환인가 4만환인가 그것이 일비 혹은 출장비 혹은 조사연구비 혹은 회의비 이와같은것은 兼처서 시당국에서 지출하는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하필 정치자금으로 시당국이 지출한다 47명에 그 정치자금인가 시에서 지출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과는 상치된다는 말씀을 여러번 앞에 보고드리고 또 평화신문에서 앞으로는 우리의 시시비비를 써주시는것은 좋으되 좀더 정확한 기사……. 우리가 3만환이나 4만환받는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정치자금이나 술주자 술먹는 주식대나 이의같은것은 사실과 상위된다는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또 이것이 오보이기를 바랍니다마는 시당국자의 말에 의할것같으면 4만환이외에도 주식대로 매일 8백환씩을 지불한다 이와같은 발표가있었는데 그것도 사실과 상위된다는것을 간단히 여러분앞에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그칩니다.

○의장 김진용; 문학우의원 인사말씀 해주십시요.

○문학우 의원; 제가 이번 종로제2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문학우올시다. 선거기간중 시민 여러분과 선배의원 여러분들에게 뜻하지않은 괴로움을 끼쳤고 선거도중 많은 애로의 고충이 있었읍니다만 여러분들의 꾸준하신 협조와 원조로서 오늘 이자리에 서게된 영광을 얻게되었읍니다. 선거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의원생활을 계속하는데에 있어서 여러분과 더부러 서울시시민의 복리향상과 시발전을 위해서 선배 여러분의 꾸준한 지도와 편달을 얻어서 여러분과같이 행동을 취하겠다는것을 굳게 여기어서 맹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버리지 마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용; 보안과장의 신임 인사가 있겠읍니다.

○시경보안과장; 신임 시경찰국보안과장 박총경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나와서 인사말씀을 올릴 기회를 주신것을 의장님을 위시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자신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과거 6·25동란 직후 83년도 12월서부터 86년6월까지 만 2년6개월동안 시경찰국 보안과장으로 있었읍니다.

4년이 경과한 오늘 다시금 옛날 일하든자리에와서 이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의장님을 위시해서 의원선배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에 의해서 이 중책을 완수해 볼까하는 그은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마는 지도의 편달을 바라마지않읍니다.

(「의장!」 하는이있음)

○의장 김진용; 잠깐만 게세요. 그다음 김수길의원의 본남아세아여행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김수길 의원; 이번 본인이 동남아세아를 개인적인 자격으로 시찰한데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여러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게신분들께서 염려해주신 덕택으로 무사히 돌아온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 예정은 월남의 「싸이공」과 그다음에「마니라」 그다음에 「홍콩」 그다음에 대만을 들릴예정이었읍니다마는 「마니라」는 「필립핀」정부에서 사정이 있다고해서 입국하는것을 거절했읍니다.

그래서 월남「싸이공」과 「홍콩」 두군데를 들려왔읍니다. 제일첫번에 「싸이공」을 들린결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우리나라 보다도 民度가 얕고 상당히 더운 지방이라는 곳으로 알려저 있읍니다.

그런데 실지로 「싸이공」에서 내려서 도시를 들어가니까 이 동남아지구에 제일 처음인것같읍니다마는 상상치 않은 수도「싸이공」이라고 하는것은 그야말로 아마 영화에 나오는 천국이라고 할까 거리같은것은 불란서식이 되었기때문에 상당히 잘 되여있읍니다.

깨끗하고……. 그래서 제가 주관으로 본것은 시행정부문에 대해서 착안해서 봤읍니다. 제일첫째 도로포장 도로포장은 그야말로우리가 상상조차 할수없이 깨끗하고……. 도시계획도 잘 되어있고 먼지 하나 나지않는 그정도로 되어있읍니다. 그다음에 상수도로 잘 되여 있읍니다.

건물은 물론 불란서식으로 되어있으니깐 모두가 양식으로 2 3층 주택으로 이런 정도로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싸이공」 시장을 만나뵀읍니다. 만나보니깐 시장이 묻는말이 우리나라 수도를 와보니 감상이 어떠냐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당신나라 수도에는 도시계획이나 도로 포장 상수도가 잘 되여있느냐고 하기에 찬양을 했읍니다.

또 당신네 나라는 어떠냐고 무릅디다. 그래서 묻기에 우리나라도 6·25동란으로 말미아마 상당히 파괴는 되었읍니다마는 당신네 나라 못지않는 아름다운 「수도 서울」 이라고 그랬읍니다. 그리고 당신 시장께서 우리수도 서울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런 말을 했드니 대단히 감사하다고 자기도 구라파는 여러번 시찰한바 있읍니다마는 동양 나라는 시찰한바 없으니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그러고 「싸이공」의 나라는 독립된지가 불과 2년밖에 안되기때문에 아직 지방 자치의회라고 하는것은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님께서 당신에게 안부를 전해드리라는 간단한 인사를 전달했읍니다. 그랬드니 감사하다는 말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대통령을 만나뵀읍니다.

그나라의 부대통령을 만나보았드니 부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얼마 안되어서 여러가지로 당신눈에 뜨이는 것이 당신나라 보다는 미약하지 않느냐고 이런점을 저한테 질문하드군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직답을 하지않고 당신네 나라나 우리나리나 다같이 반공전선에 있어가지고 활약하는 우방국가로서 당신네나라가 반공에 대한 인식을 깊게해 주서서 대단히 우리나라 한국은 당신네 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랬드니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통령은 경제장관을 겸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경제조직을 대강 물어보니까 공보장관이라고 하는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공보실장일것입니다. 그런데 공보장관이라는 지위가 장관중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내무장관 정도로……. 주무장관같읍니다. 그래서 그공보장관의 1년 비용이라는것이 그러니 총예산의 20분지1을 쓴답니다.

그래가지고 공보장관밑에 있고 이 나라는 반공국가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선전 정보 이런데에 대단히 중점을 두고 있다는것을 들었고 또 엿 보았읍니다.

그리고 또하나 느낀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문제때문에 대단히 시끄럽습니다마는 거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가정부인들이 자기집 쓰래기통을 문앞에다가 내놓으면 청소차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일일히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나서 쓰래기통만 문앞에다가 놓는답니다. 그러면 부인네들은 그동안 들어가면 된답니다. 이와같이 청소에 있어서도 규모적이며 합리적으로 잘 되어있읍니다. 그리고 거기의 공무원들을 보니까 생활보장이 되여있어요.

생활보장이 되여있는 까닭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나라는 상당히 더워서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낮잠을 잡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어떻게 일을 해나갈수 있느냐 하는것을 알어보니까 급한 서류는 생

활로 이미 결재해버리고 서류는 나중에 돌린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서류결재가 신속치 않다는 원인이 여러가지 행정면에 모순이 있는때문입니다마는 경제적면의 수반 즉 공무원의 생활보장이 되어있기때문에 서류를 갖고 앉을 필요가 없읍니다. 서류가 오자마자 결재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안타임」「코리안타임」 합니다마는 시장과 부대통령을 만날적의 시간엄수란 대단합니다. 5분전에 면회를 신청해도 안되고 5분후에 와도안됩니다. 정각 약속한 시간에 한국의 손빙식 영사가 안내했읍니다마는 정확한 시간에 문앞에 도달하니까 비서가 와서 안내를 했읍니다.

이와같이 시간엄수라는것이 대단하고 또 거기 육해공군의 군사시설을 시찰했는데 그것은 마치 국방경비대시절……. 창설할 당시의 진상을 갖겠금 되었읍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대단히 빈약합니다. 또 교육기관을 보았는데 종전에불란서교육을 받어오다가 이제는 「싸이공」 자체로서 자립적인 교육을 할려는 도상에 있기때문에 학교시설이라든지 교육에대한 행정에 질서가 아직도 완전히 잡히지않고 빈약한바가 상당히 많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홍콩」을 들렸읍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국제적 항구이니만큼 정치적인 면보다도 경제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보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첫째 「홍공」에 내려서 보니까 우리가 「홍공」「홍공」 말로만 그랬읍니다 마는 밤중에 내려서 눈에 띠는것이 「네온싸인」이 우리나라보다도 많기때문에 화려하게 보인다는것 그중에서도 일본「아지노모도」라는것은 특히 눈에 뚜였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일본사람들이 그만큼 세계

시장에 유난히 선전을 하고있다는것을 느꼈읍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언제나 한번 이런 국제적인 시장에까지 진출해 볼수있느냐 우리나라의 특산물을 어떻게하면 해외로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할수 있느냐 하는 것을 느겻읍니다.

그리고 또하나 영국사람과의 국민성을 대조해 볼수있다는 것을 느낀것이 구룡도와「홍콩」을 연결하는 연결이 있읍니다. 이것을 영국사람들의 배가 운행하는데 미국사람같으면 벌써 다리같은것을 놓고서 세를 받을려고 생각합니다마는 몇십년동안을 배로서 이용하고 있다는것은 영국국민성 자체를 나타내고 있지않은가 그래 그 기선에 매달려서 종사하는 영국인들이 한 3천명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1년에 만5천딸라 내지 2만「달라」 수입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홍콩에가니까 화신의 2배정도되는 중공군은행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마치 물론「홍콩」이 국제도시니만큼 정치적으로 언론의 자유라는것이 보장이 되어있는데 그래거기 신문지를 보니까 중공에서 발행되는 신문도 나오고 있다는것 언론은 완전히 자유로히 보장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대신 행동만은 삼가해야 된답니다. 그래서「택시」를 타다가 운전수보고 당신은 이문제가 좋으냐고 물었드니 사람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그러나 정치는 자기마음에는 들지않는것같다는 그만큼 언론자유가 보장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홍콩」에가면 음식물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홍콩」에다가 음식물을 수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외화를 획득해가지고 중공이 자기나라에서 생산치 못하는 공업의 원료를 사가지고 들어간다는것 그래 중공이 「홍콩」

을 무력적으로 점령할수있는 힘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국제적인 관계로 있겠읍니다마는 중공이 「홍콩」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면을 볼수 있었읍니다. 간단히 이상으로서 고치겠읍니다.

○의장 김진용; 그밖에 보고사항있읍니까?

(「의장」하는이있음)

○김동순 의원; 운영위원회장께서 보고사항으로서 아까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작일 평화신문기사에 있어서 제목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되어있는데 나는 평화신문에 그래서야 되겠는가라고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고하니 우리가 현재 받고있는것이 그야말로 4만환을 받고 그외에 4만환을 받는것처럼 문맥이 되어있어요.

주식비라고해서 4만환 차마비라고해서 4만환 받는다고 했어요. 돈 4만환을 주면서 2중 3중으로 주는것으로 발표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평화신문기자 어른께 이 취재하는 기술이 능난하다고 찬양하는 바입니다.

다른 신문에 안나온것을 유독 평화신문만 커다렇게 썼어요.

匕首라는것은 명장의 손에 들어가야 그값이 있지 도적놈손에 들어가면 사람만 잡는다 말씀에요.

이 평화신문이 어떠한 신문인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그러나 이 기사에 있어서 대단히 분개한것이 무엇이냐하면 우리가 집행부의 시장님 혹은 시정과장께서 이런 말씀을 안하셨다는 말씀을 명확히 말씀하지않은 사실이 신문에 활자로서 만백성에게 보도가 되었느냐 말이에요.

그야말로 사람을 잡을려고 하면 곱게잡지 이렇게 잡을수가

있읍니까?

이 기사내용을 보면은 어느분이나 공분을 금할수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 게시는 여러분들은 평화신문을 못보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하루에 5백환을 받는것으로 본회의는 1년에 90일 즉 3개월이지만 분과위원회로 공적회의입니다. 이것도 엄연히 일비규정으로서 뚜렷이 나타나있읍니다.

오늘 또 다른 신문에 이와같은 동의동문에 기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이와같은 기사를 쓰지않을것을 바라고 있읍니다.

왜? 사실이 아니니까 안써요.

어기에 있어서 특히 평화신문에서 오신분 그 사안을 십분 고려해 가지고 사안이 사실과 과히 착오가 없는 사실을 써주세요.

이것은 서울시 고시장을 때리는것도 되는것이에요.

우리가 관항목에 넣을적에 정치자금이라는 항목을 낼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있어서도 이 신문기사에 대해서 좀 12분의 연구를 해주시고 특히 출입기자 그분한테 차후에는 그러한 기사를 잘 생각해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일일히 따지지않지마는 신사도에 벗어나지 않는 기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고사항있읍니다」 하는이있음)

○방동석 의원; 보고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그동안 본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회의규칙에 의해서 보고의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단기4290년 3월20일 중구남창동 128번지의 3 김성윤으로부터 제출된 환지책정에대한 청원으로 본안은 정식 원안대로

가결되였읍니다.

동 4290년 4월17일자 중구 봉래동1가 157번지의 신미흥업주식회사 장학씨로부터 제출된 서울 역전노천주차장 취체청원의건 역시 본안대로 가결되였읍니다.

단기4290년4월4일자 접수된 한강유선업자 대표 최인준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된 연고자에게 하천사용요청의 건입니다. 본안역시 원안대로 처리 가결되었읍니다.

동4289년 12월28일자 접수된 성북구 돈암동 이병국외 43인 동 심윤택외 25인으로부터 제출된 뻐-스 주차장 이전 요망의 건 역시 본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였읍니다.

이상 네개 안건을 회의규칙에 의해서 보고사항의 말씀을 들입니다.

○의장 김진용; 그밖에 보고사항이 있읍니까……?.

(「의장」 하는이있음)

○박명준 의원; 잠깐 여러분에게 보고라할까 지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제9회 임시회의때에 결의한 시유재산 조사에 대해서 저희 23명이 임명을 받었읍니다.

그후에 각 구별로 반을 편성해서 우리 서울시의 소유로 되어있는 시유재산을 조사하기로 시작했읍니다.

당시에 우리서울시 시유재산 뿐만이 아니라 회계검사를 하게되어서 집행부측의 요구하는 시유재산과 또한 회계검사에 대해서 2중으로 하게되니까 먼저 회계검사를 마치고 그후에 시유재산 조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후에 우리 반원은 개별적으로 착수했읍니다. 집행

부의 협조없이……. 그러나 저의들의 생각할때에는 우리 서울시 시유재산이 몇개 안될줄 알었는데 역시 착수하고 보니까 과연 우리 서울시는 그리 가난한 시가 아니고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왜 그런고하니 그 넓은 전역에 흩어저있는 토지 가옥 여러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각 반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본것이 아직까지 불과 몇 건이 되지못했읍니다.

이 방대한 시유재산을 전부 조사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되었읍니다.

그런고로 오늘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그동안 시유재산에 대한것을 완전 서류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거기까지는 미칠수가 없고 해서 오늘 확실한 보고를 들이지 못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앞으로 그것을 완전히 조사할려고 하면 적어도 아마 수개월을 요할것 같습니다. 그런고로 집행부에 요청하는것은 시유재산대장과 기타 서류를 요청했는데 받고보니까 대단히 많은 수자올시다.

또 그 서류상으로 들어다 볼때에는 완전한 서류가 되지못하고 또 그 자료를 물어본즉 수복이후에 그 넓은 논을 다 완전히 조사하고 완전한 서류를 정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假帳簿라고할까……. 그래서 가장부라고 할까 임시로 만들어 놓은것을 임시로나가서 대략 알아본 결과에 거기에는 알지못했던 재산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들면 매각처분하고 또 완전히넘겨준것이 서류상으로 그대로 시유재산으로 되었고 또 있는것도 찾어보고 해서 여러가지 복잡한 건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런 점으로 상당한 시일을 요할것같읍니다.

그런고로 이런점으로 상당한 시일을 요할것같읍니다.

그래서 수개월 걸려서 완전히 조사한 그후래야 여러분에게 완전한 보고를 드리게 되였읍니다.

그점에대해서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그밖에 보고사항있읍니까?

(「없읍니다」하는이있음)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로써 끝마칩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들어갑니다.

「서울특별시국민반운영강화에 관한 반대건의안」 강을순 의원외 여섯분으로 제출되었읍니다. 제안설명하십시요.

---

3. 서울특별시국민반운영강화에관한반대건의안

○강을순 의원; 금번 서울특별시 국민반 소위 운영강화에 관한 반대건의안을 제출하게된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겠읍니다. 또한 각자 여러의원께 유인물로 배부해서 아시리라고 믿고 또한 금번 내게된 그 원인 헌법 제8조내지 제93조에는 국민은 모든 법률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하게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은 오늘날 국민반은 그 조직의 원칙에 있어서 하등의 헌법상에 보장되어있는 법적 근거는 전연이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따라서 이 전국적으로 국민반 조직강화운운 문제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정부 답변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명확히 향상할수도 있을뿐아니라 또한 금번 4286년9월 26일 서울특별시국민반 운영규칙이다. 이런것을 서울시장제 정해가지고 오늘날 국민반을 운영해 왔던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국민반 운영에 있어서 금번 서울특별시 부시장명의로 각구청에 돌린 사항을 보면은 1로부터 9항목까지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4항에 국민반은 반상회시 1인을 선정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또한 구청직원으로 하여금 담당구역을 정하여 요망사항을 수집케한다.

반상회에 출석치 않는것은 自省自改 索制 이러한 조항등을 듣고 있읍니다.

사실상 법적근거가없는 그 국민반 자체가 어떻게되어서 자성자개 또한 삭제……. 사과할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모순성을 제정했다는 이 근본자체만도 불법행위라 아니 단정할 수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전번에는 운영규칙에 있어서는 월에 2회 반상회를 개최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이번에는 월 1회 매월 1일로 정해놨읍니다.

정해놔있는데 따라서는 회의를 작성해라 또한 그것은 구직원으로 담당케 한다. 또한 4290년3월20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서울시에 통첩은 내용을 본다고 하드라도 서면 기록보고를 하라고 하는것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서면보고를 해야만이 상의하달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의회가……. 결의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반을 통해서 또한 구청직원으로 하여금 모든 국민반의 사실을 알어야만이 모든 시 행정을 운영하겠다는것에 대해서 합법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모든 시민의 법을 의결하고 있는 의결기관이 엄연히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으로 하여금 즉 자기 출신구 의원들이 출신구의 요망이라든지 모든 건의 반영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이것은 모든 의회 모든것을 무시하고 다만 반 통을 통해야만이 시민의 시정을 한다는 논지는 이해한 도리가 없는것입니다.

국민반에 소요되는 회의시간……. 시간과 노력 이것을 말씀

드리자면 서울시가 2백4십5동 통이 2천2백5십7통 반이 1만8천십5반에서 여기에 소요시간이 당시에 한시간만 규정하드라도 월에 2만5백십7통시간을 소비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1년에 시간을 일수로 하면 2십4만6천2백4시간이 소모되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물질면의 소모관계로 본다고 하면 양면궤지 한동에서 두장씩만 계산한다고 하드라도 2백4십5개동에 양면괘지가 역시 5십8권 매수로 따지면 5천8백8십매 통이 2천2백5십7개통에서 5백4십1권되는데 매수로 5만4천백6십8매 또 반에 수요량이 1만8천십5에 4십3만2천3백6십매 약 1년을 계산한다고 하면 5십만매가량 되고있는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매수는 많습니다만은 액면은 각 기백만환밖에 안되지마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한 시간과 노력을 해야만이 시정에 완전을 기할수가 있는가. 다만 이렇게 안하고도 충분한 결의기관인 의회로하여금 모든 행정이 반영될수 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해서 본국민반 반대건의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국민반운영강화에관한반대건의안

주 문

목하서울특별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민반의 소위 운영강화를 즉시 중지할것을 건의함.

이 유

전국적으로 일대파문을 야기시키고있는 국민반조직강화에 있어서 수도서울에서는 시민에에게 부당한 난극을 주는 여사한 조직을 강화의 필요성이 毫無함을 여사히 지적한다.

1. 국민반운영강화는 시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범하며 시민으로하여금 법적근거없는 의무를 강요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

1. 상의하달이니 하의상달을 표방하나 국민반 운영을 강화하지 않드라도 상하통정이 안될리없다.

1. 국민반의 운영강화는 개개의 시민으로하여금 경찰을 비롯한 관의 감시하에두고 상호시기불신을 양성하여 경찰의 도구화할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1. 선량한 시민으로하여금 기만과 강압으로서 어느 정당의 정치운동에 악용하려는 불순한 동기에서출발한 것이다.

1. 관민간의 의사소통을 云謂하나 구동의 행정계통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국민반을 강화치 않드라도 其 소기의목적을 달할수 있을것이다.

또 회기에 있어서 시민생활에 불가피한 국민반재편으로 말미아마 막대한 시 재정면에 파동을 초래케할 염려가 有할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의장」 하는이있음)

○의장 김진용; 여기에대해서 질의가 한자리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분 먼저하시고 그다음에 찬부양론이 있읍니다. 찬부차례로 통지내신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의 질의가 있읍니다.

○이갑수 의원; 국민반운영체강화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제출하고 제안자의 하나이기때문에 몇마디 집행부에 묻겠읍니다. 과거의 국민반 즉 그대로도 충분히 할수있는것을 새삼스럽게 이제나와서 재 강화해야 한다는 그 근본원리 원칙또는 그 원인이 어디있는지 혹은 내무장관으로서 지시명령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것인지 또한 이것이 앞으로 잘 운영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자신있는 집행을 할수 있느냐를 묻고싶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본의원은 반드시 이것이 운영에 만전을 기할수 없다는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집행부에서 「뉴-스서울」을 어떤 방법으로 각 통반장에게 전달시켰던 것입니다.

이「뉴-스서울」을 배포해줘가지고 동을 통해서 반장에게 배부해서 도장을 받어오너라 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전 서울시 2백4십5개동장이 이구동성으로서 이문제를 폐지할것을 요망했던 것입니다.

그문제는 한번가 만날수없고 두번가 만날수 없는데 도장을 받어오래니 반장의 그 고통은 말할수 없읍니다. 하물며 이 물질을 갖다줘도 잘 봐라하는 그 도장자체로 받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매차 반장집에서 봐가지고 도장을 받어 출석한 사람 안한사람 심지어는 아마 이유서까지 첨부할런지 모르겠읍니다.

이 반장 1만8천명에대한 반장의 괴로움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있느냐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단언하겠읍니다. 6개월이 가기전에 반장통장들은 제발 이 강화에 대한 문제를 없애달라고 청원서가 들어온다는것을 저는 자인하고 있어요. 그이유로서는 괴롭습니다. 하의상달이 도저히 안되요. 공무원이 그자리에 참석한다고 하니 서울특별시 내무부를 통해서 구청직원까지의 직원이 얼마있읍니까. 1만8천명을 갖어야만 매월 초하루날 한반씩 참석이 될것입니다. 이 실지운영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지상을 통하고 명령으로서 강력하게 내려누른다면 권태증을 느낀다는것이 사실일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석해 보세요. 하의가 상달커녕 하의가 땅속으로 들어간다는것을 알어주서야 됩니

다. 말안해요. 일언반구도 못해요. 하고싶어도 못해요. 이만큼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 있다고 말로만 떠들지만 실제면으로 언론의 보장이 안되있는것을 알수있는 것입니다. 과거대로 그냥두고해도 잘되요. 특히나 공무원들의 출석만은 강력히 추진할수 있겠어 명령계통이니까. 그러나 공무원 자체도 괴로울 것입니다. 말로는 안해도 심정으로는 괴로우리라는것을 우리는 짐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같은것으로 봐서 용두사미격이 안된다고 단언할수 없다고해서 이문제 과거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넉넉히 움직일수 없는 이 사실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권태를 느끼고 과거의 「뉴-스서울」과같이 진정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있어도 과거 그와같이 되지않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앓는 시민들의 애달픈심정을 생각할때 우리는 강화반대를 안해주면 안될것이라는 실정을 잘알기때문에 반대해야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용; 具喆會의원 말씀하십시요.

○具喆會 의원; 지금 제안자의 설명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이 국민반 운영강화문제로 인해서 전국 국민이나 시민은 다대한 의구심을 가지고있는 처지입니다. 지금 이갑수의원이 질의하고 해서 물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과거의 제도통반제도를 가지고 운영을해서 운영이 잘못된 결과가 사실상으로……. 집행부 책임자들이나 시민들이나 시의원 여러분들이 다같이 아시고 체험한바 부족된것이 없을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있는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이것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수가 없어요. 왜그러냐? 자율적인것이 못된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외국의 예를 들은 얘기를 한가지 얘기하면 어

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노무회니 의무회니 이렇게해서 자율적인 구제로서 사회의 여론을 반영시키고……. 이것이 행정부에 반영이 되어서 그야말로 민의가 반영이 될수있는 이러한 사회체제를 지향하는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 있어서 원칙일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반하여 관에의해서 관제조직을 요구하고 있다는것은 우리 국시로 되어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반항하는것이 아니냐?

삐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안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이 개재해가지고 조사를하고 특히 반내의 공무원이 잘 출석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야한다 이것이 하의상달이다 이러한 형식으로 해석을 하시는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시한다고 할것같으면 공무원이 과외시간인 자유시간에 그 피로를 회복하는 그자유로운 시간을 억압해가면해까지해서 이것이 효과를 거둘수 있느냐?

오히려 이것은 하나의 좋지못한 부작용으로서 나타나지않을까……?. 하나의 압력을 가저오는 현상을 면치못할것이 아닌가 이러한 결과를 될것입니다.

또한가지 우리의 시민생활로 보아서 낮에만 벌어가지고는 먹고살지 못한다는것도 명백한얘기지만 밤낮 벌어도 못먹고 사는것입니다.

또 그나마 일할 자리도 없는것이 사실인것입니다. 이러해서 시민이나 국민은 기아선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오히려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면을 고찰하고 동찰하고 해서 구제방향으로 기본생활의 경제확립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

해야 자동적으로 집행부에 협조를 할 의사를 갖게 될것이다. 이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또한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10만아니 30만 실업자니 이렇게하지만……. 30만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람들을 될수있으면 구호정책으로 구호대책으로서 직장 또는 모-든 구제대책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서 나간다고할 것같으면 협조하지 말라고해도 집행부가 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되고 또 민은 하지말라고 그래도 집행부를 위하는 시민이 될것이요 이것이 당연한 얘기에요. 그런데 어기에 귀중한 그러한 시간을 소비하고……. 공무원까지 보내가지고 지금 강의원이 지적한대로 용지 기타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경비가 많이든다 이러한것을 될수있으면 영세시민이니 프하선상에서 울고 있고 땅을치고있는 이런사람들의 어떠한 생활협조를 해주는것이 오히려 국민반운영에 모든 자연적인 성과를 가저오지 않을까해서 이 국민반 강화가 좋지못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아까 이갑수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과연 강화를 해서 좋을것이냐? 현재대로해서 지금 이상 제가 몇가지 지적한대로 이러한 면을 집행부니 실행을 시켜야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이냐?

제가 말씀 안드려도 시민을 괴롭히지 않고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한다고 할것같으면……. 시민 스스로가 집행부에 협조를 했을것이 아니냐? 이러한 간단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이것이 또 우리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에대한 제도라고하면 그러면 법이 악법이라 제정될때까지에는 지켜야할 의무를 지겠지만 법이 계약없이 강력하게 추진

하지않으면 안될 하등의 근거가 없는것을 구지 내무부장관의 지시라고해서 통첩이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강행할 필요가 어디에 그 근거를 발견할것인가? 시가 우리 의회는 시민생활을 위해서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집행부도 노력하고있는것이고 우리의회도 斗爭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것인데 또같은 입장에서 시민을 다같이 사랑하고 생각한다고 할것같으면……. 구지 이렇게 우리 자유의 시간과 기본권을 억압하는것같은 이러한 감을 주는 국민반 체제를 강화해서는 사회적으로 좋지못한 부작용이라는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절대로 이러한것을 시행할수없다는 동시에 집행부에서도 어디까지나 다시 재론이 됩니다마는……. 시민을 실질적으로 위하는 방면으로 행정을 해야될것이며 또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원칙을 위배하는 또 위배되는 행정을 강요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영강화반대 건의안의 찬성발언을 하고 내려가고저합니다.

○의장 김진용; 잠깐 묻겠읍니다. 발언신청한 분이 여섯분이게신데 역시 마찬가지 얘기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발언권주어요」하는이있음)

지금 말씀에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발언권을주세요」하는이있음)

그럽시다. 장의순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장의순 의원; 장의순이올시다. 국민반운영문제가 過般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되었고 그로인하여 왈가 왈부논의되어서 본의원도 어떻게 하면 좀 일을 잘할수 있을까 해서 여러가지 생각해보았읍니다. 그러면 국민반 운영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운영하고있는가해서 서울특별시 예규집을 들추어보았더니

4286년9월26일 규칙 제28호에 국민반의 목적이라하여 다음과같이 되어있읍니다. 참고로 적어온것을 읽어드리면 「국민의 공생활영위의 협동기본단위로서 상호부조하고 도의적인 친선을 도모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동시에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하에 반내에 시행되는 행정적 또는 국민운동인 모-든 시책을 자발적으로 추진실천함으로서 지방자치향상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읽어볼때 대단히 좋습니다.

하등의 그릇된점이 없다고 보았읍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반을 조직함에 있어서의 그 목적은 상의하달 下情上通이라니 대단 귀에 거슬리는 느낌을 가집니다.

상의하달은 옛날 군주정치시대에 있어서 그들의 전제 다시말하면 독재양식을 선의적으로 수식한 봉건적표현법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 하였고 제2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엄연히 기재되어 있읍니다. 상의하달이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공복으로있는 공무원들이 상의 然하고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대단히 불손하다고 생각안할수 없읍니다.

그 國體마저 이해해 주고 모르는 무식의 폭로가 아닐수 없읍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뜻을받들어 정치를 해가기로 마련된 민주국가임에 틀림없읍니다.

국가의 최고의 의사로서 볼때 국민의 뜻이 上意아닌가봅니다. 다음 하정상통을 한다는것 소위 여론정치를 지향한다는뜻으로 우선 호의로 받어들이고저하나 그 거점을 내무행정의

일말초 적 어용기관이니 다름없는 국민반을 둔다는것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왜 수다한 거액의 선거비를 없애면서 국회는 무엇때문에 필요하며 국회의원은 왜 하필 지역적으로 뽑느냐 말입니다. 언론기관은 무엇때문에 필요하냐 말입니다.

여론의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있는 언론의 활동이 근대정치의 지배적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것은 부인못할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양심적인 십만선량의 불을 뿜는듯한 絶呼에도 애국적인 언론인들의 목이 매어 외치는 호소에도 일절 귀를 틀어막으면서 이제 새삼스레히 하청을 동찰하기 위하여 국민의 소리를 듣고싶다하니 그뜻이야말로 대단히 ri륵하나 그방법에 있어서 대단히 졸렬 하다는것에는 아연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문보도에 났읍니다.

소위 국민반을 사찰강화에 주목적으로 삼고있다는것을 알고있읍니다.

말하자면 국민전체를 형사취급을 합니다. 國民皆刑事補主義로 나간다는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것은 전체주의가가는 최종의 선이되는것입니다. 쏘련의 인민들의 그비극을 볼때 그들이 하나의 커다란 첩보망속에 갇혀있음으로서 더욱 적절한 역경에 빠저있는 것입니다. 소위 同生을 모아 감시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감시하고 이웃사람이 사촌 감시해서는 도저히 하루 한시도 살수 없읍니다.

공무원의 사상동향과 학생의 사상동향을 조사한다해서 천진 난만하게 자라나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것은 국가만년대계를 위해서 그대로 둘수 없읍니다.

국민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국민상호간의 부조갱생 공생활 영위의 협동등 그러한 의미에서 해나가는데 본

연의 의의가 있지않나 합니다.

상의하달이니 하정상통이니하는 말을 내세운다는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읍니다. 과거의 국민반 본연의 목적에 도라가서 해나가기바라며 운영강화등 문제는 중지해주기 바랍니다.

○홍순우 의원; 지금 여러의원들께서 다 말씀 했지만 빠진것 몇가지를 말씀드리고 또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대해서 제 일개인으로서나 어떤 현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어데까지나 나는 국민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이 국민반을 재편성 재강화하는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해서 시비를 가지려 하는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문제는 無謀愚策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결과로서 자세자박만부득이 그 위치를 실각당한 전 이익흥내무장관의 후임으로서 등장한 장 내무부장관의 선창으로서 이 문제는 드디어 발단되었던 것입니다.

이문제는 거월 12일 국무회의의 통과를 보았었고 전국 도지사 회의때에 국민반 재조직 문제가 제시된 다음 15일에 개최된 전국경찰국장회의에서는 장 내무부 장관은 국민반을 중심으로해서 경찰 정보망을 재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환기하게 되었고 이것이 정부및 여야당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위 국민반이란 기구의 편성및 그 운영방법과 이 국민반이란것을 한사코 재조직 재강화하여야겠다는 장내무부장관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알어보아야 하겠읍니다.

내무부의 구상을 보면 국민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4백만가구를 국민반으로 편성하고 1가구에서 한사람식을 매일 2

회 동원케 하고 읍 면 동 시 군 도 특별시에 각급 위원회를 두고 그 각급 위원회의 회장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과 동리장으로 하고 각 위원은 지방의원 중요 기관의 장과 기타 학식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중앙위원회회장은 내무장관 부회장은 내무차관 위원은 관계부 차관으로 조직하도록 되어있어 어디까지나 각급 행정부기관장의 주도하에 설치된다고하는것이 첫째로서의 특징이며 이 국민반을 재강화 하여야 겠다는 이유로서는 첫째 국민반을 중심으로하여 소위 五列索出의 경찰 정보망을 재정비 하겠다는것 국민반은 이웃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때에도 필요하고 또는 둘째로는 국민반을 중심으로 상의하달 하정상통을 하게하여 좋은 방향으로 국민을 지도하겠다는것이 아마 이 두가지 이유가 국민반을 조직하겠다고 하는 주된 이유인 것같습니다.

그러나 이두가지 주요한 이유는 모다 본래를 전도한 논지이며 와이말 헌법에 造謁者인 장내무로서는 감히 이러한 이유를 내세운다는것은 언어도단임이 분명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첫째로 국민반조직은 법적근거가 없는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에게 권리가있는 반면에 의무를 강요하는것이 철칙으로 되어 내려오고 있는것입니다. 만약 이런견지에서 국민을 동원하려면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에 모든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읍니다. 내가 참가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만약 국민반을 조직해서 출근을 강요한다면 헌법 12조에 위반이되고 헌법 13조로 말할것같으면 모든 결사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민반을 조직해서 동원시킨다면 자기 본의에 없는 동원을 시키므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대신 둘째로는 국민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오열을 색

출한다 해서 경찰 정보망을 강화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이의가 없읍니다.

치안을 유지한다는것은 당연하나 그러나 하필 국민반을 조직해야만 오열을 색출하고 조직안는다해서 색출 못할바 없는 것입니다.

상의하달 하정상통이 못되기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정치꼬락서니가 된것이 아닙니다.

지방 의회가 있고 국회가 있는데 하필 국민반을 만들어서 그러한 융화기관을 만든다는것도 우수운 것입니다. 가령 국민반이 조직안되어서 오늘날의 정치가 부패를 했고 절량미농가가 속출하여 심지어는 7식구가 일시에 몰살을 하다싶이 하는 신문기사가 매일같이 나는것은 국민반을 조직안했으므로 야기되는일이 아니였던것입니다. 국민반을 조직하면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하면 첫째 국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범한다는 것.

둘째 상하통정을 위하여 이런 조직이 필요 없다는것.

셋째 개개의 국민을 관의 감시하게 두어 국민성을 음산하게 하는것.

넷째 여당의 정치운동에 약용된다는것. 그런데 도대체 가가호호의 성인으로 하여금 가입출석을 강요하고 이를 「뽀이콧」하는 사람을 비국민으로 취급하고 국가경찰의 엄중 감시하에 두어 그 일동일정을 살피고 정부시책에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일방 우리 사회의 중요한 식층 지도층이라고 할수있는 공무원의 사상배경및 정당관계조사를 하여 그들을 여당에 붙들어 매놓고 학생 특히 대학생층에 대한 사상동향을 내사운운하여 그들의 자활적 정신을 박탈하게된다면 실정에대한 불평불만은 표면화되지 못할것이요. 현정권은 무사태평을

구가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치상황과 정신상태가 그 실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말입니다.

대개 이러한 조작된 애국적인 발언을 강요당해 표의부동의 음산한 국민성을 가지게되고 서로 의심하게되어서 또는 잠재의식과 표면의식도 묻지않기때문에 더 거기에 대한 伸大를 이르키는 동시에 민중은 정권으로부터 점점 혼란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기력 사태로 몰아넣으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게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국민반이니 애국반이니 하여 무얼 조직해서 정부권력 밑에 모든 정치를 한다는것은 옛날에 독재주의국가에서나 될수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헌법 제1조에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것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국민한테 그러한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소위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문제를 빨리 건의해서 철회하도록 하지않으면 아까 말씀 한바와같이 국민반 강화운운이라는것을 국민이 국민성을 음산하게 만들뿐만아니라 선거대는 관권당에 강요를 당할터이니 우리 시의회에서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반기를 들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종결합시다」하는이있음)

○의장 김진용; 질의가 있읍니까?

○김제윤 의원; 몇가지 질의를 하려합니다.

국민반 재편성의 강화는 상하간의 파악을 하기위한 획정적 조치라고 해서 장내무장관이 지방장회의석상에서도 주장하였다고 알고있으며 이 반상회는 관의를 민간에다가 시달할수있는 국민반은 될수있을 망정 민의를 상달 할수있는 국민반이 될수있느냐는 것을 얘기하고 상호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이라

했는데 무엇때문에 법으로서 관에서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회합을 강압적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친목은 자연스러운 융화에서 나오는 친목인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강압적인 친목을 도모하려는지 모르겠읍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느낀것을 질의하려합니다.

제가 처음 서울시청에 들러쓸때 시청앞에 민성함이란 것이 걸려있는것을 보았읍니다.

그결과가 어떤결과를 얻었는지 이러한 민의상달을 위한것이 그 사실 무엇이 되었는가 들어오는대로 어떻게 처리했다든지를 알려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우리시에서는 잘생각했다고 느끼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토요일날 보면은 시민의 청원일이라고 써있는데 하고싶은 얘기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고싶은 얘기가 많을것인데 어느정도의 청원을 받어 처리했는가 1주일동안의 소득과 효율은 무엇인가 그것으로서에 어떤 시민의 소청사수에대해서 무엇을 제공했는가 말해주시고 또하나는 국민반의 편성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는 것이 있읍니다.

예산편성……. 국민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양면항지등 사무용품 대금에 대한것을 지적했지만 돈이 어디서 나와서 쓰느냐 말인것입니다.

다음에 있어서 순서로 그것이 나온줄 믿어지지만 그돈은 사실상 운영상에 있어서 어떤돈으로 그것을 쓰고있는가 명백히 얘기해 주십시요. 그돈 자체가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내는 것으로 쓴다면 시민자체가 요구하지않는 국민반을 편성운영함은 부당한것이며 운영비 이것이 어떤 항목으로서 오늘 현재까지 먼저 5월1일날 반상회를 해왔는가 이점등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의원; 금번 실시하고있는 국민반 운영강화에 관해서 본의원이 인상과 시민의 생각하는 점에있어서 볼때 현재 집행하고 있는 자치민주행정을 선행하고 하나의 중앙집권제인 관치행정이 되기쉬다는것을 본의원이 몇가지 국민반 운영강화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것을 선배여러분께서도 말씀했으니 우리나라는 엄연한 민주주의를 복지 로하고 법치국가가 엄연히 되어있으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여기에 뚜렷하게 표방으로 내는 상의하달과 동시에 하정상통을 내는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조직된 의결기관을 누구의 의사를 대하여 또 이 의결권은 어떤운명에 놓여있는가를 집행부로서는 잘 알것입니다.

시민의 의사를 대표해에 의결된것이 하나의 독선적인 기관같이 생각지 않나 유감천만의 뜻을 표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실례를 들면 남대문시장 도살장 운영문제등 수차 결의되었지만 오늘날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와같이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상의하달 하의상통을 실시한다함은 민주주의국가에있어서의 민주행정을 병행하고있다는것을 재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국민은 의무가 엄연히 법에 제정이 되어있는것에 있읍니다.

그러면 의무에의한 구속력을 하나에서 하나 구속력을 가하는 것인데 그 법이라는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아시다싶이 주권자가 제정해서 일반국민에게 시행하는것이 법의 대원칙으로 생각합니다. 하기때문에 의회정치 입법에서 법을 제정해서 이 구속의 3대요소에 분명히 되

어있는것이고 구속 내지 강요한다는것은 이것은 의식적 법의 존엄성을 망각하고 독선적인 관시행정을 가한다는것은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서 실행 방법에있어서 첫째 공무원의 신원을 조사 둘째에 있어서는 대학생사상을 사찰 셋째에 있어서는 통반장 반원이 출석을 해서 그 명단을 제출하는것을 이 세가지가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공무원이라는것은 제가 말씀드리지않어도 이미 공무원이라는것은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국가자체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받는 임금에 신원보장 경찰신원보장이라든가 또 주권자의 틀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타등등의 일절을 완비를 해서 그 조건밑에서 채용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순한 사람의 하나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밖에 없는것입니다.

둘째로 학생 대학생 사상사찰이라고 하는것은 이것은 현재에 한국에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 경찰이 올시다.

그러면 첫째 경찰에서 몇 퍼센트라고 했느냐 하는것을 나는 이것을 확실히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에서 첫째 월1회이상 동적부를 실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所轄파출소에 있는 자신이 이것은 동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호적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것을 잘 알어야 할것입니다. 제자신도 동장을 했읍니다. 엄연히 경찰일반행정에 자신들이 호구조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명단에 있는 당해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했느냐 하는 것을 좀 경찰일반행정을 하면 재인식시켜서 실천함으로서 자동적인 이 동정을 스

스로 알어질것 같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우리나라 민주국가에서 미래가 희구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 서울시에 경찰국가화하자는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는것이 많은 출석을……. 이 문구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왔기때문에 집행부에 당하는 시장님을 보좌하는 부시장님께서 이에대한 해명을 해달라는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단을 작성해서 보고를 해라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읍니까.

나로서는 이유를 이해할수 없고 들어보아야 하겠고 첫째 의무를 강요할수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이고 공무원의 신원을 조사하는 이유가 어디에있는것이냐 또 대학생에 사상사찰을 통반장을 통해서 하나의 요원으로 쓴다면 경찰화로한 이와같은 인상을 주지않느냐 하는것을 확실히……. 또한 동반장 명단은 제출하라는 자의행위 이 네글자에 해명을 해달라고하는것을 질의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의장 김진용; 답변을 듣고 일로 종결하는것이 어떻겠읍니까?

좋습니다 하는이있음

○부시장 신용우;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이 답변해올리겠읍니다. 국민반을 강화하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것을 강화를 하고있느냐 이렇게 무름이 많으신데 저도 법조문에서 국민반을 강화하라는 법조문은 없는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행정관례로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것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관례로서 해오고 있는것은 사실인데 어떠한 실익이 있어 국민반을 해오느냐 이것은 행정조직으로 볼때 우리 자치법상에는 알로가면 구 다음에 통까지 자치법을 이행해 왔읍

니다.

동회에서는 이행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통반까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도 하실분이 게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지 행정운영문제가 서울시만 보드라도 하나의 동단위로만 해가지고 시민의 한사람에까지 갈수있는 조직이 되겠느냐 그것은 하나의 관제로 통이 있고 반까지 두어서 그래가지고 행정사항이 시민에 직접 손발에까지 도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어쩔수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관례로 통이있고 또 반이 있고……. 그렇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행정관례가 생긴 연유를 알수있고 또 반으로 주어가지고 반에서 반상회를 하는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하자면 행정사항을 서로 반원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행정적인 행위 이것은 정치적 회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되는 실례를 이 누구나 다 잘알고 있지만 반운영에 지금 하고있는것이……. 이 5월달에는 무슨일을 하고싶다는 실천사항 혹은 계절적인 문제로 여름철에 닥처오면 위생문제를 잘 해보고 싶다 파리를 잡으려고 싶다 우두를 마치고싶다 이러한 실천사항이……. 또한 이러한것을 알어주십시요하는 중지사항 또한 그외에 반에서 반원들이 모이면 또 행정기관에 하고싶은 이야기가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이렇게 지금까지 처행을 하고 나오고 있읍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민반 운영측도 나가고 있읍니다. 벌서 수년전에 작정되어서 이렇게 국민반을 운영해왔고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실익을 올려가느냐 하는것은 이것은 마 수자적으로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달에 한번씩 모어서 이러한 실천사항이나 주지 사항을 중심해놓고

얘기하는것이 마 저희들로 보아서 실익이 있고 또 구체적인 예를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의회의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한번 작정합시다 해서 한번 작정된 사항 기타 여러가지를 어떻게 시민에게 시민의 손발까지 내려가지않느냐 하는 얘기를 이러한 방식을 생각할때 우리가 구청장이나 혹은 국과들이 모여와서 얘기하고 구청장과장들이 모어서 얘기하는것이 과거 예에 따라가면 과거 동장이 한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것 그리고 따저본다면 그것은 직접 시민에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질의한 사항을 해가느냐 하는것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관계로서 지금까지 해나오고 있는 그런것이 사실입니다.

이 국민으로해서 상회에서 모든얘기를 하고 우리가 민의라는것이 우리 의회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 가서 민의를 듣고 그럴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들은 그럴필요가 있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나 혹은 동에서 하는것이나 이러한것은 어디까지나 범위가 행정면에 국한할것입니다.

그외의 일은 할수없읍니다. 그 범위내의 일을 가지고 한달에 한번 두번 직접 주민과 머리를 맛대고 얘기하는 기회는 사실상 이러한 기회가 아니면 없읍니다. 이상적으로 얘기할려고 하면 무슨 하고싶은 행정상의 작정을 할때에는 구청장이 가서 그 주민과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하는것이 제일 이상적일 것입니다.

전부구청장이 구의 주민과 한자리에서 얘기하는것은 도저히 현재와같은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그까닭에 불가피 그렇게 되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얘기를 중심삼아서 얘기할때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면 그얘기도 듣고 또 서로 피차에 같은 사항이면서 성질이 다른점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는 기회를 가지는것이 절대로 해로울것이 아니고 이익이 있다는 견지에서 하는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떤근거에 의해서 하고있느냐 하는것을 이걸로 답변드린걸로하고 왜 재 강화하느냐 재강화했느냐 정부에서 강화를 해라하는 이러한 시달도 있었읍니다라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했느냐하면 안한것이 아니고 국민반을 지금까지 해왔읍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공무원의 근무사항도 解馳해지면 이따금 이런감이 있으면 긴장을 내기위해서 근무를 철저히 해라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읍니다마는 좀더 강화를 해라 하는 얘기도하고 저희들도 강화해야할 사무운영을 역시 하지않느냐하는것을 이렇게해서 다시 강화를 해본것입니다.

한가지 다른것이 무엇이 있느냐하면 너무도 이것이 잘 운영안되니 그 방법상 공무원들이 좀 잘 나가다.

공무원들이 좀더 잘 반상회와같이 나가서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는 이런것은 종래와같고 국민반운영 목적이 아까 몇의원께서 목적 전부를 내 읽었읍니다.

국민반의 원래의 목적이 아까 읽었던 목적 그대로입니다. 제가 다시 부행을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운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경찰적인 견지에서 혹은 이러한 납득이 있으니 이것을 보조하는것은 조직이 상당히 좋은것이니 경찰적인 면에서 이것을 그반에서 반원들이 도둑놈이 나오니 도독놈을 막도록 합시다 하든지 혹은 붙칠에 불이 많이나니 방화하는 하나의 이러한 조직을

다시 살려서 방범 방화하는 이러한 면의 경찰적인 면에서 국민반의 주목적을 될수있으면 이러한 기회에 이러한 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얘기도 하고싶은것이 하나의 경찰적인 면에서 장려하게되는것입니다.

이 방범 방화작용으로 국민반을 많이 현실화해왔든 것은 이것은 종래 이것의 국민반이 하나의 방범적인 단위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며 종래에 그랬읍니다. 최근에 이것을 특히 강조하자니까 아마 그것이 다시 「쏘크」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종래에도 없었던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기본권이 국민반의 강화로 인해서 저촉을 받지않겠느냐. 이것은 혹 국민반운영이 잘못되는 경우를 항시 생각하서서 혹은 말씀하신바와같이 잘못 운영하면 기본권이 저상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잘만 운영한다면 오히려 기본권을 창달하는 기회가 될수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윤의원이 민성함혹은 청원일이 시 행정의 실적이 있읍니다마는 어떻한 효과를 내고있느냐 하는것은 이것은 처음 시작될때 당초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많이 내고있었던것이라고 합니다마는 최근에와서 이효과가 저하 되어서 극히 미미해서 이러한 효과가 있읍니다마는 발표할 정도가 되지못하게 미미하게 되어있읍니다.

앞으로 더 할용하도록 하겠읍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데 예산 국민반 예산을 제가 수자는 기억못하겠읍니다마는 예산에서 책정해주신 그예산 그대로 운영하고있지 그책정 예산이외에 한푼도 더 쓴것이 없읍니다.

이수자를 말씀드려서……. 아까 사계과장을 찾아갔으니 이제와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예산책정이외에 단 한푼도 쓴일이

있읍니다. 불충분하지만 이상으로 끄침니다.
(「의장」 하는이있음)
○의장 김진용; 말씀하세요.
○박수형 의원; 성안하기전에 한 두어마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가 알건대는 장내무부장관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대단히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하는분이라고 믿어졌는데 내무장관에 취임되고 대단히 미련한 행위를 했어요. 공연히 국민반이라고 하는것은 86년도서부터 하나의 규칙으로서 운영하고있는데 이 잠잠한 다시말하면 그늘속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는 사자를 공연히 때려깨워 가지고 시끄럽게된 상태에요.

또 이지음 여당에서는 선거법을 내놓았다 말이에요.

그 내놓은 선거법 내용을 가지고 보니깐 아주 큰일났다 말이에요. 그래서 장내무부장관이 국민반을 강화시킨다는 목적과 또 여당에서 내놓은 선거법의 내용 이것을 대조해 보니 명년 5월선거에있어서 이 국민반을 통해서 어째든 선거를 강행해보자는 이러한 좋지못한 다시말하면 민의에 역행하는 이러한 불순한 내용이 여기에 개재되지 않었느냐 하는것을 본인뿐만 아니라 전체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친목을 도모한다든지 상호 문제를 토의한다든지 이것은 이미 되어있는것이고 안만 내무부장관이 강화해라했자 이것이 안되는것입니다.

왜그런고하니 저도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또 우리 동내에서 반장으로 있는것입니다. 반장으로 있는데 역시 반민이라든지 동민여러분은 잔소리를 자꾸하면 안되어요. 자꾸 모여라 어쩌라해서 잔소리를 자꾸하고 싫어하는것으로 그네들이 자율적인 의사에 맽겨야 그네들은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응분한 반

원의 임무를 다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연히 강화해서 대학생의 사상을 사찰한다. 공무원의 성분을 조사한다. 그러니까 선거를 위한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되어서 분분하다 말이에요. 어떤 내부적인 조직이라고하는 것을 어디까지나 국민 스스로가 자율적인 의미에서 나와서 그것이 한덩어리가 되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것이 또 모여서 다시말하면 아래로부터 자율적으로 올라오는 조직만이 엄밀한 의사에서 실질적인 애국적 조직이지 관에서 명령해서 하는 조직이라고 하는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직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은 의도하는바가 다른것입니다.

피차가 다 아시는바와같이 관에서 명령해서 하는 조직이라고하는것은 언제든지 그것이 돌게되는것입니다. 이태리의 전전 민족사회당 「파시스트」가 그네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또 「힛트러」가 국가사회당이라는 「나치」당을 해가지고 세프조직까지 다 했는데 그 말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또 대동아 전쟁당시 일본이 대정익찬회니 무엇이니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조직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이 애국조직이라고 하는것은 집권당이나 정부나 관에서 명령하게되면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기에다가 잠잠이 그럭저럭 잘되어 나가는데 명년 선거를 계기로해서 국민은 죽느냐 사느냐하는 판갈레에 섰는데 여당의 내무부장관이 이것을 강화해가면 그 실천사항으로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것 안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장내무부장관이 현명하시다면 그 지시사항을 철회하는것이 제일 좋고 다만 반상회는 현상을 유지하면 되는것이에요.

이런 정도로 오늘 강을순의원의 제안인 국민반 강화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하는 동시에 만장일치로 건의안대로 찬성해 주실것을 바라는바입니다.
(「재청이요」 하는이있음)
○의장 김진용; 이의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이있음)
그러면 이건의안은 그대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벌써 한시가 지났읍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로서 정회하고 오후2시반에 속개하겠읍니다.
(13시 05분 정회)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용; 재석의원 27명으로서 오후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야시장 철폐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4. 야시장철폐에관한긴급동의안

○강을순 의원; 금번 서울 종로 중구를 비롯한 야시장철폐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오늘날 우리한국의 경제실정 또는 서울시 산하의 경제실정을 볼적에 과연 야시장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은 의원 여러분께 매낄따름입니다. 또한 과거 일제시대에 야시장을 설치한 일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부활한다는 이러한 견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당시에 10년전에 서울의 실정 또한 한국의 현 실정을 보건데 이것이 필요하냐 안하냐 또한 의심치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또 따라서 각종 범죄가 있다고 생각치 않을수 없읍니다. 우

리 정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각도에 국제시장을 다섯개 시장을 설치하는 대통령각하의 論示가 있었든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일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민간자본을 드려서 서울시에는 남대문 오장동 3개시장에다가 막대한 그야말로 수십억을 드려서 현재 재건도상에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는 시장을 본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놓았읍니다마는 지금 비여 있읍니다.

이렇게 국가에서는 국제시장을 지어놓고 지금 비여있다말이에요. 여기에대해서는 하등에 시당국에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운영한다는 생각은 없고 다만 길바닥을 이용해가지고 야시장을 使許可한다는것은 도의면이나 이론상 옳지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하 서울시의 교통량을 볼것같으면 과연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정당히 운영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또한 생각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또 따라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므로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범죄행위를 막을 도리가 없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따라서 위생시설은 하등의 대책도 오늘날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또한 야시장을 설치하는데는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허가를 해주었는지 이것이 의문이 되는것입니다.

또한 야시장을 설치한 원인은 노상인 영세민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구실은 나와있읍니다마는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날 신문에 보도된것과같이 가입금 3만8천환 조합비 3천6백환 계 4만1천6백환을 현재받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영세민을 위한 처사냐 말이에요. 영세민을 살린다는것보다도 어떤 일개인에게 주어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독점 시켜주는것이 아니냐 이런 견지로 보아서 이 야시장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철폐 건의안을 낸것입니다.

많이 찬동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발언권을 억제하는것은 아닙니다.

될수있는대로 중복을 피하서가지고 요령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조영석 의원; 이 야시장 철폐문제에 관해서 동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실정이라든지 사회현실을 보아서 과연 야시장을 설치해야만이 우리국민이 충족할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정당한 관찰력을 가진사람은 누구나 짐작할수있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로 좋게 해석을 해서 설치해야 되겠다고하는 이유로 해석해볼때 하더라도 하등의 이유가 발견되지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이유는 얼마든지 발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은 이 구체적인 몇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설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 수도 서울의 도로폭은 대단히 협소합니다. 과거 60만내외가 살고있든 시대의 도로폭을 가지고 현재 160만이나 되는 인구와 막대한 교통량의 증가로 인연해서 교통의 복잡성은 날로 심해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두에다가 야시장을 설치하므로서 인마의 보행상 어떠한 영향을 가저올것입니다.

그 교통의 복잡성을 어떻게 막을수 있을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심히 고려하지않으면 안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

므로 이 교통량으로 보아서도 이 설치의 이유는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지적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다음 또한가지는 도시 미관상으로 보아서도 가두에다가 천막 기타 판자집등등을 나열해서 야시장을 설치한다 하면 그것이 도시 미관상으로 보아서도 대단히 좋지못한 결과를 가저오게 되는것입니다.

그보다도 제일큰 이유가 된다고하는것은 구매력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국민의 경제상태가 핍박해짐에 따라서 국민의 경제능력이 극도로 저하되어서 구매력은 날로 저하 일로를 걷고있는 현실정에 있는것입니다. 또 상당한 일반시장과 가도에 점포들 속에도 그야말로 구매력이 없어서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는 이런 현실에있어서 야시장을 해가면서 까지 구매력을 우리가 참고한 그러한 이유는 여름에는 썸머타임이 있어서 일광시간을 오후에 상당히 이용하고 있는것입니다.

봉급자까지 퇴청후 다섯 여섯시까지 라도 수시간 세시간의 일광시간을 우리가 이용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광시간을 이용해서 일반시장내지 가두점포에서 얼마든지 상품을 구매할수있는 이러한 현실에 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특히 밤에 야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용품을 산다드라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하는것을……. 우리가 현실은 볼수가 있는것입니다. 아까 강의원이 언급했지만 야시가 밤에 도로에 행해서 나열이 된다고하면 야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각종범죄사실 거기에 수반되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날것을 우리는 예기할수 있는것입니다.

일전에 실정으로보아서 이런점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각종사고의 미봉

과 방지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이 설치는 부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할수있다는 뿐만아니라 이런것이……. 도로에 이런 야시가 나열되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不激한 도로 또는 그 청소같은것은 원만히 되지못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위생상 문제 그런것을 생각할적에 도저히 야시가 지금 부적당하고 부당하다고하는 것을 우리가 이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 몇가지 말씀드린것같이 현실정과 여러가지 이유에 비추어서 야시장을 설치한다고하는것은 도저히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때문에 야시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말씀드렸읍니다.

○김인기 의원; 이 야시장으로 인해가지고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저하는 것은 세세한 부문은 아까 두분께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고요.

서울시 재정에 특히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노점상인이라할것같으면 서울시 전체면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노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정확한 세율을 부과해야만 그 원칙이 서야할데데……. 왜 이런말씀 드리는고하니 점포를 가진사람으로서 노점상인의 세금까지 첨부해서 물어나간다는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일례를 들자면 김장때 동대문이나 각 장에 시한달 도로사용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상인들이 그 도로주변에있는 그 주변에있는 그점포를 얻으려고 심지어 5 6만환 7 8만환주고 얻습니다.

그러면 그돈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사람이 지금 받어가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인으로하여금 한달동안에 수입이 얼만고하니

한달동안에 수입이 2십만환 내지 3십만환까지 드러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세금을 한푼도 물지않고 점포가진 사람들이 그 세금을 물게 되는것입니다. 일례를들어 제가 말씀드리자면 세금을 책정할적에 그 시기에는 세금을 책정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점포가진 사람에한해서 세금을 매길때 과년도에 김장때 돈을 많이 벌었읍니다.

저희들은 이만한 세금을 내야한다 이렇게 인정과세를 매겨야하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면 동대문시장이나 어느장을 막론하고 시장안에 또 노점이 있읍니다.

그 노점이 길 한복판에있어 차가 들어오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김장 업자들은 물건을 길거리에다가 전부풀어놓고 팔고 간다 그말이에요.

그러나 점포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한달 두달 그러고 가버리면……. 자기의 피와 땀을 들려가면서 영업을해서 그들을 세금까지 점포가진 사람들이 전부 물게되는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서울시의 세원은 극히 핍박해가는 이유를 이러한점에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서 야시장을 버려논다할것같으면 그 점포를 가진 주인으로 하여금……. 그사람들은 한시간이나두시간 장사보고 도로다라납니다……. 그러면 그 세는 점포앞에있어도 주인에게다 물리게되는것입니다. 세금과장한테한까지 물어보고 싶은것을 노점상인한테 오늘날 세금을 나는 질의하고저 합니다.

경험을 적은 바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시장안을 가있으면 노점이 한 500개됩니다.

그노점에서 하루 상인 하나앞에 바치는 돈이 5백환 내지 6

백환바칩니다.

이 돈은 실지에 있어서 도로사용료라 할것같으면 집행부에게……. 서울시로 들어와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그 돈은 중간 사람들에게 간다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이냐 도로사용비가 아니라 청소비로 받고있다는말씀이에요. 2백환 3백환 4백환 내지는 김장때에 들어가서는 7 8백환 받고 있읍니다. 지금 이러한 실정에놓여있읍니다.

이러함으로서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판자집을 철거한다고……. 도시 미관상 여러가지 나쁘니까 노점을 철거한다고 이런 여기에서 정치가개재되여가지고어느때에 가서는 이익일것같으면 이것을 허가해주고 경찰이 가서 때려 붙고 철거한다 왼통 야단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시간이면 또 어떻게 교섭을 해서 그자리에 도루 앉게 된다 말씀이에요.

이러함으로서 제일중대한 문제는 동대문 남대문시장에 있는 집에서들은 전부가 시장안을 들어가지못하게 되어있는 형편에있어서 그 상인들로하여금 外處거리에다다 뿌려놓고 구르마로 끌어드리는 형편이다 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습관을 폐지하지않으면 안된다는것이 여기에있는 것입니다.

이러하므로서 시방 재무국장한테 말씀드리는것은 오늘날까지 노점상인들한테 세금을 어느정도 부과했는가 이것을 근거로 내주십시요.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노점상인의 세금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점포를 가진 상인이 운다. 세금이 거치지 않어서 그사람들이 차압을 당하는 이런 형편에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점 상인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부과하겠는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셋방으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옮겨 밤에 야시장을 벌

려놓으며……. 이런 형편인데 그사람 집을 차압을 할수는 없는것이요. 거기에 가서 그사람들한테 차압할 능력이 있는가 이러한 등등에 건을 비추어서 수도 서울에 있어서는 점포를 가진 주인으로 하여금 경제면에 시달려 나날이 문을 닫고 이러한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재원을 갖다가 확보할수 없는것을 근거해가지고 절대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김경원 의원; 이 야시장문제에 있어서는 상거래가 나쁘고 좋고 무슨 공안상 교통상 나쁘고 좋고 불문해놓고 몇마디 집행부에있는 양반한데 부당성을 지적하겠읍니다.

도대체 이게 야시장인지 반관반민영업 장소인지 모를만한 증거가 나타나 있다.

이런말이에요. 뭐냐하면 집행부에 게신 양반도 신문지상을 통했던지 아마 풍문이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야시장 허가났는데 업자모집하는데 경찰서 보안계장이 왜 개입하느냐 말이에요.

경찰서에다 업자를 불러다놓고 조합비 가입하는데 얼마다 또 맺달 관리비가 얼마다 4만천여환을 내라 야시장으로 전부 들어가라 하고있다 말에요.

그러면 우리시 자체에서 이런일을 할수없는지를 알고 있다면 당장 이것을 취소시키지 않으면 않될가 아네요. 그러면 어째 이런 반관반민과 같은 야시장을 하고있느냐 그말이에요. 따라서 집행부에 게신양반도 국회에서 어떤말을 하고있는지 아실거 아네요.

노점에있는 상인들한테 경찰권을 발동해서 이런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4백여명이 진정서를 내놓고 야단을 치고 있지않냐 말에요.

국회에서도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는것을 아신다면 즉시 진상조사해서 시정해야 할텐데 그냥 두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는것을 알수없어요.

우리시의원을 바지저고리로 아는모양이에요.

특히 문제가 붙어있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면 해당분과위원회를 무슨 얘기가 있을거에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듣건데 특권층급모당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어떤사람은 각하한단 말이에요.

이런일 하지마쇼.

집행부에있는 사람은 집행부다운 일을해야지 이런일을 하니까 우리의회들이 여러분에대해서 예결한 말을 안할수없다 말이에요. 만약에 집행부에있는 분들이 시정을 안하면 우리 비상각오를 취하겠어요.

특히 산업국장 잘알어두쇼.

○具喆會 의원; 이 야시장허가 문제를 둘러싸고서 대단한 시비가 있는것같은데 저 요새 대개 여기서 들어가면 집으로 갑니다마는 요 2 3일전에 밤거리를 한번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아는 몇사람을 만났어요. 그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머지도않는 시청앞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노동자올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날로 핍박해 저서 하루에 일터에서 가동한 그 대가 가지고서 생계유지하기가 지극히 곤란하니까 다른사람들이 다 평안히 자고 집에 돌아가서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는 동안에 벌지않으면 안되니까 千 拘苦를 하더라도 가족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다만 백환이라든지 천환을 벌어야 겠다고 나와서 염치불행하고 있는것을 봤읍니다.

또 국민생활이 도탄에 빠저서 어려운데 이렇게하는 현실이라는것이 행정부로 봐서 도저히 좋은 현실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번영을 시키기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인기의원이나 여러의원의 지적은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허가제를 만들어서 모두 조합소에다 잡어넣어서 잡어넣지않으면 경찰이 동원해서 하느니 못하느니 조합비를 내느니 하는결과로 이끌었냐 말입니다.

적어도 가로상에서 보도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의 야시장을 볼것같으면 그 상행위에있어서의 생태 이것이 비누 몇개 단배몇갑 또는 치솔 이런 기만환에 지나지 않는 자본을 가지고 될수있으면 다만 몇백환이라도 벌어서 가족과 생활을 영위하자 이세상에서 낙오자가 될수없느니 죽을수가 없으니 궁여지책으로해서 시민의 궁지에서 소생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하겠고 조장을 해야함에 불구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허가를줘서 조합비다 가입비다 이렇게 받게한다말에요.

이래가지고 한달을 통한 매상비가 얼마나 되느냐말에요. 오히려 바진금액도 봉창못하는 실례가 비일비재할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남대문을 비롯해서 백화점을 많이 신설해 놨어요.

이것은 야시장은 켜녕 낮에도 소비자가 적은거에요. 왜 세국민층에 돌지않어요. 돈이 갈데없읍니다.

상가가 그래서 발전이 안되는것인데 그런데 야시장은 왜생겼느냐 이렇게되니 모두가 장사해도 못먹고 사는데 야시장정

도하면 세금을 들낼것이고 해서 자기생활을 부조하자고 하는 것을 기회를 이용해서 허가제로 한다 가입금을 받어야한다.

나중에는 세금을 내야한다 이렇게해서 오히려 영세상인생활부조를 목적으로 하는것을 이용해서 이길조차 막으려고 하는일을 해당책임자는 연구하고 실질면을 검토해 봤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그사람들이 생활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또 나에 커다란 시장에서 상행위를 하는것보다 밤에 하는것이 커다란 상행위인지 이것을 검토하고 조처를 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 하겠읍니다.

이것이 하나의 언제나 답변하는 하나의 형식의 「잘 알어보겠읍니다」「아직 그런길 모르고 있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말고 실지 우리가 바라고있는 국민생활의 기본단위를 분석해서 과연 그사람들이 자기목숨과 더부러 자기가족을 살리기위한 궁여지책으로 하고있는것이냐 아닌가 이런문제를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고 만약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라면 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 언제까지 할것이냐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렬 의원; 본의원은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마는……. 먼저 야시장 철폐문제전에 제가 국내실정과 오늘날의 서울의 실정을 볼적에 과연 8 15해방후에 시장이 마치 우후 죽순격으로 많어요.

또한두집건너 맨 상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한국 적게 생각하면 서울시내에서 무엇을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느냐? 그말이에요.

생산없는 시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지금 보면 청계천변을 이용해서 물건들을 팔고 있읍니다. 그것이 고무신 한켤레에 1환이면 1환 1환5십전이면 1환5십

전 이렇게해서 소비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시장만 조직을 하느냐? 무슨 일로 생산없는 나라에서 시장만 만드느냐 이거 대단히 우리국민으로볼때에 부끄러운일이 아닐수 없읍니다.

허가보다도 우선 우리가 실질적인 산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들은 물론물건을 우리가 판다면 모르지만 외국에서 물건을 가저다가 팔기만하니 혹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든 물건이 많어서 시장을 늘리고 판다면 부끄럽지 않을지 모르지만 물건이 없는것을 외국서 얻어다가 이것을 10전에서 15전으로하는 이것을 우리가 허가니 검사니 해가지고 이 복잡한 도시에다 야시장을 내논는다는것은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8·15 해방이후에 인제는 어느곳을 가드라도 한집건너 가개이기 때문에 서로 막바꾸어 먹어도 몰라요……. 시장이 많어요.

생산이 안되기때문에 우방국가의 외국의 원조와 외국의 물건을 다만 소비만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서 야시장 철폐문제전에 우선 시장이 많어요. 소비자없는 시장에 뭣이 필요해요……?.

먼저 제 청계3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것입니다.

서울뿐만아니라 부산……. 아니 부산뿐이 아니라 전국에 생산에비해서 시장이 그렇게 많어졌에요.

외국사람들이 볼때에는 생산이 많어서 그렇다 그러지만 그것이 아닐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국민의 견지로 보거나 시민의 한사람으로 볼때에 이 소비를 시키고 생산이 안되는 시장이 어떻게 되겠읍니까?

우리입장을 그만큼 건설시키고 입장을 그만큼 영등포나 부평등지에 건설했지만……. 오늘날 현사회는 만날 고무신짝에서 광목조가리나 만들어서 서로 팔어먹고……. 도대체 저는 시장을 만드는것을 저는 싫어합니다. 생산이 없는 시장이 뭣이 필요합니까? 인제는 팔어먹을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시장을 너무 확장시키는데……. 대단히 우리 국가적으로 또는 시적으로 대단히 불미한 점이고 또 그렇다고해서 생산이 안되면 좋습니다.

생산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든것을 공업화하고 우리가 건설하고 우리가 해야될것입니다.

그리고 판자집이나 천막집을 해놓고 종로나 을지로3가에다 시장을 빌리고 있는데 이로 말미아마 벌서 불미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많이 왕래하는 관계로 쓰리니 뭐니 상당한 잡음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장이 또 생긴다는 문제는 시의원은 다 원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판자집이나 천막집을 해놓고 종로나 을지로3가에다 시장을 빌리고 있는데 이로 말미아마 벌서 불미한일이 많이 생기고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혼잡을 일으키고 많이 왕래하는 관계로 쓰리니 뭐니 상당한 잡음이 많이 나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장이 또 생긴다는 문제는 시의원은 다 원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점을 참작하시어서 우리의 의견도 들어주시고 또 시민의 의향도 들어주십시요.

그사람들도 저는 행복이 있어야 할것인데 우리한국정부에서 너무 그사람들에대한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견지에서는 대단히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만 야시장 철폐를 절대로 찬성하면서 시장 가를 축소시켜주시기를 바라는바입니다.

(「의장」 하는이있음)

○의장 김진용; 야시장 철폐 긴급 동의안에대해서 조영석의원외 네분이 철폐하는것이 옳다는 철두철미한 의견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대해서 철폐하는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렇지않다면 집행부측의견이 답변을 듣고 의결하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는이있음)

(장내소연)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산업국장; 지금 여러분이 집문한것을 종합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바로 답변의 말씀을 올리기전에 이 야시장을 설치하게된 동기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는것이 이해해기 쉬울것 같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야시장설치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서울시내에 종로 간선도로 부근에 산재하고있는 이 노점을 단속하고 취체를 강화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세상인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시키라는 이러한 의도하에서 이 야시장 설치문제가 대두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일방적으로 이 야시장이 서울시에는 명물로 되어있으나 일제시대부터 오래역사를 가지고 시민과 어떤 긴밀감을 느끼게 되었던것입니다.

또 이 야시장을 설치함으로서 국산 장려에 일치가 되겠다는것과 또 일면으로 시세입을 기도한다는 전제하에서 暫次

강화되었든것입니다.

그러면 청과시장설치에있어서 근본적으로 검토하여야할 몇가지 문제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여러의원들이 걱정하시는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현재에 경제실정에 비추어서 이 야시장을 설치하는것이 시에 맞는 조처냐 아니냐 심심히 검토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구역과 설치에대한 의견을 관계당국은 건설국 경찰당국과 여러번 회합을 가지고 검토했든 것입니다.

첫째 공안상 방공상 견지에서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다음에는 사행행위 폭력배에 조장을 막을수 있느냐 없느냐 또하나는 영세상인을 과연 어느정도 흡수할수 있는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신중히 이것을 검토해왔든 것입니다.

그결과에 있어서 시내에 종로선 을지로선 서대문선 명동선 남대문선 이 다섯가운데에서 교통상으로 보나 공안상으로보나 위생상 견지로 보아서 별 지장이 없고 이것은 취체할수 있다는데 완전히 합의를 보게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로서는 다시한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무부 상공부에서 의견을 具申해서 한번 무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회답이 오기를 이것은 이 구역중에 종로선 을지로선 서대문선 이 야시장으로서 개방하는것을 이것은 시에 비추어서 무방한 처사로서 좋다는 회답이 왔든것입니다.

이 회답을 이안을 가지고 심심히 검토한 결과 그중에서도 최소한도 축소해서 종로선 을지로선에 한해서 허가를 하게되었읍니다.

이 허가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이 비용문제에 이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실비이외의 시설비를 받어야 허가조건으로 하는 동시 이 부담금은 시설비를 부담하는 나종에 투입되

는 상인조합 승인을 받어야 할것이고 앞으로 여하의 경비 일절은 상인총회에 의결에 얻어서 하였든바 자율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든 것입니다.

기타 상행위를해서 되었다든지 요구를 해서 되었다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에서 허가를 해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항간에서 이 시설비를 과대히 징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기때문에 저희로서는 다시말하면 경고를 환기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폐단을 조사중이고 대략 현재 받고있는 1만9천환 2만8천환 정도로받고 이 부과계산을……. 역시 입지조건이 다른 관계로 해서 자율적으로 사정하기는 곤란한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구역중에 여기에 사정을 건설당국에 의뢰하고있는것입니다.

또하나는 이 야시장을 반민반관하는 형식으로 경찰이 운영하고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시초문이고 神에 지시라고 아니할수 없읍니다.

그이유로서 말씀드리면 현재 조합에서 조정하고 있는 1만9천환 2만8천환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해서 지금 시설을 못하고 않하고 있는것입니다.

다만 경찰개재설이라고 하는것을 믿기가 어려울것이라고 보는것입니다.

허가를하고 편파적으로 정당적으로 관리해가지고 허가를 하지않느냐 말씀이신데 이사실은 전연 없는것이라고 명백히 말씀드려둡니다.

또 시장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신데 현재 어떤 행정방침이 서있으면 그 운영에 있어서 그 운영의 방침이나 취지에 맞도록 되어지느냐 않이냐

여기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봅니다. 일단 법에 의해서 했다면은 취소도 법적 근거를 두어가지고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 사항에의한 부과금문제에 있어서 당국에서 심심한……. 취체당국과 연락을……. 시설이 되지않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려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갑수 의원; 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두가지만 지적해서 재차 묻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는 서울시내에 거리거리에 산재해서 상인 노점을 철폐시키는……. 수용하기 위해서 시장을 허가했다는 문제와 또한가지는 어떤당에 정치적으로 배경이나 편당적인 처사가 있었다는 이 문제 두가지라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종로 을지로 서대문 3개소에다 야시장을 설치해준다고 할때에 과연 서울시내에 일부거리에 영세상인들이 산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 산재한것이 과연 범죄를 감출수 있는 한계를……. 이것은 도저히 막을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하는것을 우리는 엄연히 알어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영세상인 즉 노점을 철폐시키는 이것은 방비하기 위해서 야시장을 했다는것은 아마 말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구실은 될것입니다.

이것은 헛 공문서가 된다는 것을 알어야 될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어떤 파당적인 성질을 띠지않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제안자의 한사람이 아닙니다마는 아마 여기에 산업국장께서 엄연히 게실것입니다.

서울시내에 2백4십여 동장들이 이 지역에 관계는 동장들이 한자리에 모어가지고 대표를 선출해서 종로선 서대문선 중구에서 아마 이 문제를 이 야시문제를 이왕에 허가해주려면 여

러분의 수족이 되여있는 동장들이 매일같이 일을 시키고 있는 이런 등등에 모든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이런 등등에 동리 모든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동장들은 이것을 강요한다는 충원이 한두번가지 않었다는것을 아마 산업국장 잘 아실것입니다. 일단 추궁을 산업국장에게 두번 세번 네번 무려 수십차례 부시장이니 교섭 갔읍니다.

2백4십개동에 동장들이 모어가지고 구별로 모여가지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시비로 해준다고할것같으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있을것이나 또 공무상 옳은점이 있으니 하는 이러한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누차 갔든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회답이 없이 가타 부타 없읍니다.

과거에 예를 보세요. 봉래동에있는 시장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든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과거 김두한의원이 자유당에 소속해 있을때 시에서 5십만환 이라는 자금을 주어가지고 송두리채 없어지게한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것을 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일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업가에서 이 권한을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정치적 배경을 가하드라도 안 줄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그때 그러한 답변한것을 잘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서 도저히 우리나라가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근거없이 하신일이니까 당연히 부인하실줄 알고 또그렇지 않아도 말씀 하실줄 믿습니다마는 실지 이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못할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인호 의원; 최인호올시다. 야시장 설치에 관해서 주무국

장 산업국장께서 첫재 영세민에대한 하나의 생명선을 연장하는일터를 간선 한다는동시에 이시장재원의 하나를 포착되는 근원으로서의 두가지 목적으로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실지 관청 자체가 이 존재하는것이 그자치 단체 지역에 사는 주민이 있음으로 이것이 살수 있다는 것이 현행정을 보드라도 알수 있을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논조를 들어 보거나 취지를 들어 보아도 미숙한 견지에서 사회적으로나 사회학에서나 지리학으로 연구해 보아도 필요성을 느낀 점을 발견할수 없다는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물의가 많이 되어 있든 우남회관 문제에 있어서 바로 부의장님께서도 누누히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한 사실이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6·25동란을 위시해서 오늘날까지도 역시 전시하에있는 까닭으로해서 우방 국빈이나 여러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차차 설치하자면 민족문화상의 저하를 폭로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의 위신에 관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성이 있다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종로나 을지로 이 장소를 놓고 볼때에 있어서 서울시 건설행정에 있어서 가장 계획적이고 자손만대에 명랑한 서울시 재건을 한다는것을 내놓는 야시장이라는것은 그것과는 반대로서 이 명랑한 서울시 건설에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는 그런 결론을 가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흉중에 있어 오장육부가 건전해야만 이사람이 일신에 건강한것과 마찬가지

로 수도 복판에 간선 도로 종로 을지로 어기에 야시장을 설치해는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은 하나의 부작용의 결과로서 올 우려성을 등한시할수 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원인이 되여가지고서 이 건설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허용은 이 실례를 연장시켜서 간선도로의 전체에 이것을 허용해준다고 하면은 오늘날까지 우리 서울에 교통량이 많아서 고유한 생명을 잃고 매일 사고를 방지못하는 찬라에 이러한 복잡한 혼란이 있었다는 결과로서 자동차는 고사하고 사람운반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결과에있어서는 어떻게 할것이냐 사람이 다니는 운송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이 문명선진 국가를 더 나가서 (헤리곱타)로 운반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못할려면 이 서울시 건설에 엄연히 문화도시로 화한다고 하면 공장과 상가의 주택을 지역별로 건설해 나가야만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복판에 간선도로를 혼란시키는것은 맹점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어서 동의한 분에게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즉시 철회할것을 요구합니다.

○김경원 의원; 김경원이 올시다. 산업국장께서 나와서 아까 답변하신데 대단히 뱃장이 세다 말이에요. 적당히 잘 주장만 말고 시장앞에 隱當한 얘기하는것을 알어야 한다 말이에요. 무슨 당신 독단이 그렇게 거짓말했다 말이에요. 4월7일자 경향신문을 찾아 보시요.

좀 당무자 책임자면 두뇌가 좀 밝아야 해요. 사회의 여론이 充益 되어 떠도는 판국에 적당히 시민 여러분 앞에 그런 답변을 한다말이여. 당신이 좀 그러한 신문지상을 보란 말이여. 그래가지고 자기가 빨리 경찰이나 자기의 부하를 동원시켜서

조사를 하는것이 원칙이지 그런일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런일이 어디 있단말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했다 말이에요. 내가 산업국장한테 얘기하지 않었어요. 무슨 수작이여 도대채 수작이. 만약 당신 이것을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어떻게할것이란 말이여.

취소할 용의있소 없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강을순 의원; 본인이 제안자이기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수 없고 산업국장 답변에 딱 두어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허가를 법적근거에의해서 허가를 해주었다.

또 취소하는것도 법적근거에 의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허가에대한 상식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읍니다 마는 허가의 범위를 확실히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는것인지 또 하나는 노점상인을 수용할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서울시산업국장 답변으로서는 지극히 유감된 얘기올시다.

개인의 자격 자연인의 한사람으로서 얘기한다면 나도 동정할바 있읍니다. 그러나 노점상인을 수용할수 없다하는 말씀을 했는데 전번에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에서 6개월 내지 1년동안 무료로 주겠으니 들어오시요 라는 별라별 교섭을 다한 일이 있읍니다.

상인들의 각종조합에서 그래도 들어오지 않어요.

그길 알어두어야 합니다. 노점상인을 수용한다 수용한다면 현재 기성건물에 수용할수 있지않느냐 이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그러한 그야말로 영세민을 위해서 시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합이면 현재 기성되어있는 시장이 비어있는데에다

가 수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도 생각해본일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의장 김진용; 이만 정도로하고 산업국장 답변하실것을 있읍니다.
○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야시장을 설치함으로서 어느정도 흡수할수있을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야시장을 설치허가를 내기전에 당국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심심히 검토했든것입니다.

물론 현하 이 사회의 경제정세에 비추어서 야시장이 설치된다고해서 전면적으로 노점이 없어지리라고는 기대를 못했든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노점이 흡수되리라는 자신을 가졌기때문에 대책없이 전면적으로 흡수가 되지않는다고 해서 대책없이 노점을 방치해 주는것보다는 이러한 흡수하는 대책을 강구하는것이 나으리라고 생각을 했든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당적으로 편파적으로 처리한일이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결과적으로 오비이락격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인자신은 그러한 생각밑에서 처리한 일은 결코 아닌것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을지로상의 2백4십5개동에서 결의해가지고 동으로하여금 운영시키도록 하는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이신데 여러분이 아시는바와같이 동은 자치단체도 아니고 또한 구청장이나 동장은 보조기관에 지나지않는 것입니다.

현재 시범지구라고 허가한 개소는 과거 을지로 3가를 시범지구라고해서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허가한 것이지 결코 이런생각을 전제로해서 처리한것은 아니라고하는것

을 말씀드려두는것입니다.

다음에 법적근거말씀이신데 이 법적근거에 있어서는 현재 이 시장관계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이 되지않었기때문에 우리가 쓰고있는것은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령으로 이것은 시장취체규칙 중앙도매시장법 두가지밖에 없읍니다.

이 야시장 설치의 법적근거는 시장취체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것입니다.

(「몇항에 있어요?」하는이있음)

이 야시장관계허가는 취체규칙 부칙에 원칙적으로 시장허가라고하는것은 자치단체나 여기에 준하는 공공단체가 아니면 경영할수 없다고 되어있읍니다. 다만 부칙에 대해서 본법이 제정되기전에 된 시장은 제외한다고 했기때문에 본법에의해서 야시장을 허가하게 되었든 것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찰관여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상 싶읍니다. 이것은 제가알기에는 현재에는 확실히 경찰이 여기에 관계가 없읍니다.

그 증거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을지로 2 3가에서 이것을 언제인가……. 8일부터인가 개설할려고 하는것을 경찰이 지시한 가격범위내가 아니면 안된다고해서 제지하고있는 상태에 놓여있읍니다. 이점 오해없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용;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충분히 의사발표가 되었으니 이만 정도로 그치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31인 가 26인으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일정에 의해서 시세조례중 개정법 건의안을 상정합

니다. 설명은 세무과장이 하신답니다.

---

5.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제가 간단히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원래 국장님께서 하시는것이 원칙인데 세법 관계가 되어서 자세한것은 제가 알고 있기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2월12일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또 3월2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시세조례의 개정에대한 준칙이 내무부에서 왔읍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세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개정된 세목이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삭제된 세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10「페-지」종전에 가옥세가 1개당 6십환하든것이 2환으로 되여있고 도축세가 소 한마리에 종전에 2십환하든것이 3천환으로되어있고 되지가 한마리에 6백환하든것이 천환으로 되어있고 차량세가 종전에 100분지100으로 부과하든것을 100분지 200으로 부과하도록 세율이 인상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취득세는 종전에는 등기가격에 의해서 100분지6으로 했든것을 이번에는 등기가격으로 부과를 하지않고 실제 매매되는 가격에 의해서 부과하도록해서 100분지4로 개정이 되었읍니다.

다음에 특별행위세는 종목이 여러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稅事이 전체적으로 인하가 되었읍니다. 다음에 면허세는 종전에 6종으로 구분되어있고 1종마다 세율이 정해저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표로다가 세율을 인하시켜가지고 그 세율에 대해서 100분지 200으로 부과율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다음에 있는 금고세 접객인세 광고세 전화세 벌목세 이것은 세율이 원래 근소하기때문에 이번에 세목은 전체가 폐지가 되었읍니다.

다음에 교통세도 전체적으로 세율이 인하가 되었읍니다. 이상이 금번 개정안을 낸것이 올시다. 저희가 낸 개정안에 대해서 잘 심의하서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려갑니다.

○의장 김진용;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보고해주세요.

○재정경제위원장대리 박수형; 지방세법전문 107조중에서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안중에서 개정안으로서 나온것이 바로 제2조입니다.

제2조에있어서 영업부가세는 시에서 집행하고있는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것과 같이 변동이 없이 100분지50그대로 나와서 역시 무수정이고 다음 2항의 광세부가세도 종전과 다름없어서 무수정으로 되어있읍니다.

다음 3항에 있어서 호별세로 별표 제1항의 부과개수 한개에 대해서 1환 이것도 역시 무수정으로 하였고 제4항의 가옥세는 한개에 대해서 본예산대 9십환으로 통과시켰든 것인데 이번에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인하되어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2환씩 하자고 제안되어있는데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매개당 1환8십전으로서 수정했든 것입니다.

다음 12「페-지」에 가서 임야세도 역시 그냥 놓아주었고 다음 7항에가서 도축세에 대해서는 역시 소 한마리에 3천환씩 하도록 되여있고 또한 말이나 돼지 한마리에 대해서는 천환까지 받도록 세법에 규정되여있읍니다.

그런데 개정되기전도 소한마리에 대해서는 2천환 돼지 한마리 말한마리에 대해서는 6백환 이렇게되어있는데 그러면 경기도라는지 지방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느냐하면 소 한마리에대해서는 역시 천5백환까지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만이 이것이 3천환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러면 전에 본예산심의시에도 2천환하는것도 너무많다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어기에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 세법에 규정된 한도로 집행부에서 다 부과했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역시 시민한데 직접적으로 많은 인원수에 부과되는 세금은 경제상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해서 가옥세라든지 이런것은 깎으면서 이것은 그대로 놓아둘수가 없다고해서 소한마리에 6백환씩 받어서 2천6백환으로 했고 말에 대해서는 8백환으로 했든것입니다.

다음 8항 조업세도 역시 그대로 놓아두었고 9항의 차량세에 대해서 이번 개정법에 의하게되면 서울특별시만은 차량세별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100분지3까지 부과를 하게되었읍니다.

그런것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100분지200을 부과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우리는 어기에 대해서 100분지150으로 수정했든 것입니다.

다음 9항 취득세 특별행위세 이것이다.

무수정으로 되고 그다음에 14내지 3 4 5 6항도 다 그대로 놔두고 11항 동력세도 그대로 놔두었읍니다. 전체 집행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가옥세 每箇에 대해서 백8십전 도축세 소한마리에 2천5백환 말하고 돼지가 8백환 여기에 집행부가 100분에 200이 100분에 150 이렇게되어서 수정되었읍니다.

심사보고를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김주흥 의원;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개정에 관해서 좀 늦게 예산결산위원회에 이것이 회부가 되었읍니다.

아마 착오로 말미아마 그런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것이 재정위원회의 완전한 합의를 보지못하고 나온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오므로해서 그안을 중심으로해서 우리가 결론을 본것을 결국은 금액상으로서 여기에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수정된 개소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에 제2조제4호에 가옥세……. 이 가옥세 부과지수 1개에 대해서 2환으로 되었읍니다.

이것을 우리 추가경정예산에 백5십전으로 책정을 하었읍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에 백5십전 이것과 약간한 감액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정위원회에 안으로서 이 조례안이 보고되다 하드라도 또한 예산조치로서 백5십전으로 볼수있다고 보아서 서로 여기에대한 합의를 볼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제6호에가서 도축세 이것이 소 1두에 대하여 3천환 말 1두에 대해서 천환 여기에대해서 산업분과위원회의 의견도 듣고해서 지금 그 식육이 상당히 비등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 본예산에서도 논의된 바의 같이 이것이 도장세나 도축세로 말미아마 인상되는 것보다는 그 소와 돼지에 원가가 굉장한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해서 이러한 막대한 그 물가에 변동이라는것은 이 세금의 조처에 의한것이 아니다. 일단 물가와 달러 이것이 급격히 오르므로해서 가

격에 차이가 났다.

그러한 근거에서 이것을 집행부 원안대로 인정을해서 세입조처를 취하는것이 좋겠다 그래서 3천환 천환 그대로 했읍니다.

이것은 재정위원회의 연락이 되지못한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8호 차량세올시다.

이것은 세금의 100분지150 재정위원회와 꼭 같은 율을 보고있읍니다.

이 세입문제에있어서 사실은 저희 분과에서 수정된것은 둘이 있읍니다만서도 재정위원회가 수정한안건과 비교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심의에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가옥세에 있어서 재정위원회안이 한개에 대해서 백8십전인데 저희 예산책정이나 저희 의견으로서 백5십전으로 했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타협할수 없는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상 책정은 율을 달리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옥세의 도축세에 대해서 차이가있고 차량세에 있어서 합치가 되었읍니다.

○의장 김진용; 그러면 심의보고는 끝났읍니다. 제1독회로 들어갑니다.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의없읍니까?

(「의장」하는이있음)

○具喆會 의원; 질의하시기전에 심의하신 재정분과위원회의 예결위원회에서 여기에 각 세목 에 해당하는 기본표가 나와있읍니다. 제1호에서 부터 6호까지 나와있는데 6호에 대한 적용 사항을…….

○의장 김진용;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재무국장 참석하서서 여기에 원안에대한 설명을 보충할것을 주신다면 더 설명하시겟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잠깐 구의원 보류합니다. 재무국장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아까 세무과장이 시켜서 설명드렸읍니다.

그런데 세무과장이 설명하는 가운데에 재정분과위원회에서 그 수정안에 관계되는것을 좀 강조했 드랬으면 좋을것을 그 점을 좀 밝혀 드리지 않어서 의문이 생길것같아서 관계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읍니다.

가옥세에 관해서 말을 드린다면 종전에는 부과개수 1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6십전이였읍니다 마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부과개수마다 그 환으로 되는데 그 환이라고하는것은 서울특별시의 부산과 대도시 3개 도시에 서는 그환으로 이렇게 되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지방세법에 의해서 명시된 한도액이라고 하는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한도액이라고 이 이내는 어떻게든지 자치단체에서 정할수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읍니다만은 그점을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볼적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개당 그환을 받는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내무부에서 볼때도 다른 도시의 달러서 서울특별시는 재정이 풍부하고해서 가옥세에 대해서 2백환을 받는것이 적당하다고 내무부에서도 준칙을 발행하고 있읍니다.

자치단체에서 물론 권한사무로는 부과율에 대해서 책정을 할수있는것같이 자치법에는 되 있읍니다마는 세법에 명시되 가지고 있다면 거기는 한도까지 부과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있읍니다.

한도액까지 부과안해도 좋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방세법에 규정된 한도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뿐만아니라 한도가 2백환으로 되가지고 있는데 1환8십전이라든지 1환7십전으로 부과를 한다면 서울특별시라고하는 자치단체에 돈이 더 필요치 않다는 증명이 될것이고 따라서 내무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분여세라든지 사정하는데도 직접 관계됩니다.

그리고보면 집행부 있는 저희로서 볼적에 시재정에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분여세라든지 보조를 얻는데도 막대한 손해를 보게됩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생각하시는것도 일리는 있읍니다마는 집행부로서는 아주 곤란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재정상으로 큰 손해가 갈뿐아니라 또 지방세법의 개정에 법률의 정신이라든지 내무부에서 나온 準牒의 구속력이라든지 퍽 곤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도축세 종전에는 소한마리에대해서 도축세 2천환을 받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6천환 돼지 한마리 6백환 이런것이 천환으로 되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도 한도액까지 3천환 천환으로 지방자치법과 내무부 장관의 준첩 그대로 했읍니다. 이것 역시 아까 가옥세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한도액까지 안하면 안됩니다.

아까 재정위원회 박간사께서 말하기를 경기도에서는 소한마리 천5백환을 받는다고했는데 도세로서 그렇게 받습니다마는 시 읍 면에서 또 천5백환을 받으니까 3천환은 같습니다.

그다음 별표 5호 세액의 100분지 200으로 되가지고 있읍

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100분지50으로 삭감을 했읍니다마는 역시 100분지 200한도까지 해주시지 않으면 서울특별시가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국고보조 혹은 분여세를 받는데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고하는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갑수 의원; 시방 재무국장께서 이 지방세 개정에 따르는 최고한도의 액면은 받어야 겠다는말씀이 게신데 대단히 곤란해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라고 해가지고 중앙에서 받을수도 있고 한계가 해석될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디까지나 중앙의 보조관계를 드시는데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민이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더 많이 낼수 없다는것이 우리 대변자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가옥세가 이렇게 올려가지고는 담세력이 약해서 부담할수 없어서 끼기소」 하고 끼는데 중앙에서 너의 재정이 풍부하니까 보조를 조금 준다고 한다는데 말이 안되요.

국고보조를 위해서 받을수 있는것을 왜 안받느냐 하는것은 담세력이 적어서 못받는다 말이에요.

이런 경위로 깎는다든지 회의록에 있지않어요.

그걸 내무장관에게 갖다 보여주세요.

주머니는 있던없던 한도액대로 다받어라 하는 정치가 있을수 있느냐말이에요.

이것마저 국민반을 통해서 해야겠읍니까? 그래 중앙에서 내려온 사실만 가지고 얘기마시고 지방의회의의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너무 구애되지 마시기를 부탁

합니다.
○의장 김진용; 그러면 여기에대해서 具喆會의원 질의가 있겠읍니다.
○具喆會 의원; 3일 모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방세법 개정안이라는것을 구체적으로 유인물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잘 알텐데 유인물을 안주셔서 우리가 어느 한계로 개정이 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희의 무능력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장 재무국장이 요전에도 지방세법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손에 아마 여기의원들 여러분 게십니다마는……. 개정이 어느 범위로 되어있는지? 모른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까지 유인물을 안본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때문에 다시 여기에 나오서서 거기에 적용할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것을 설명해 주실것과 우선 우리지방자치단체로서의 최대 최소의 활용의 재정권을 가지고 서울시의 재정권을 운영해가면……. 하는 생각을 하지않느냐? 막연히 그냥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여서 이렇게 봤읍니다.
  이래가지고 올렸읍니다.
  최대한으로 받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지극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의장」 하는이있음)
○의장 김진용;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강을순 의원; 재정국장님에게 하나 질의하겠읍니다.
  조례안 개정안 제2조의 4호 7호 9호 세가지에 대해서 좀 의심된 점이 있어서 질의할려고 합니다.

4호 가옥세 기준에 있어서 종전의 6십전하든것을…….
(「6십전이아니라 9십전이요」하는이있음)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것입니까? 인쇄는 6십전인데……?. 그러면 9십전이 맞는것이겠지요……?.
(「네 인쇄가 잘못된것입니다. 9십전입니다」하는이있음)
인쇄좀 똑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만두고 다음이 9항 차량세에대해서 아까 재무국장께서는 세원을 포착하기위해서 최고한도로 다 받어야 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마 100분지 300까지 아마 한도를 정한것같은데 워구태여 이것을 100분의 200으로 했는지……?. 그원인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도축세에 대해서 2천환하는것을 3천환……. 마치 우리가 보는 견해는 자동차를 가진사람이라고 할것같으면 최소한도 백만환이상 가지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것을 3배로 올린것을 안받고 다 2백으로 位까지 줄이고 심지어는 이 도축세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득이한 시민의 건강을 포착하고 있는 이 도축세에 있어서는 일천환 더올린 그원인……. 이 차이점의 원인 마 아까 재무국장께서 말씀이 지방세원의 재원과 모-든것을 포착하기위한 의미라고 할것 같으면은……. 응당 차량세도 마 2배까지 100분지300이라고하는 그 얘기하는것이 타당치 않을까 이렇게게 생각됩니다. 그두가지의 의심난점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이있음)
○김석근 의원; 제가 질의하고저 하는것은 개정안 제2조 9항의 취득세 문제 올시다.
취득세를 「부동산」○위라고 했읍니다.
괄호열고 「2십톤미만의것」괄호 닫고 차량에 대해였.

그 취득가격의 100분의4 또는 년부가격의 100분의6이라 이렇게 되여있는데……. 이거 재정위원회나 예결에서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기는 하겠읍니다만……. 쉽게 말하면……. 즉 귀속재산 불하를 마터서 이전등기소에서 새로 새 인증과세를 합니다.

표준을…….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려고 해요. 그러면 담배감이나 드러야되요.

그래 그것이 끝나가지고 다시 세무소에가면 그 취득에 대한 겸위를 알려고 호출이 나와요.

5 6만환 짜리를 불하를 마터도 「너이 돈 어디에서 났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저금통장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그러면 그 그돈 어디서 났느냐? 마치 길가는 사람이 그사람이 쉽게 말하면……. 보통 공무원이니까 갑자기 혹은 보통 영세국민인데 옷이라도 좀 좋은것을 입고가면 너 이것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고 있읍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텐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이 취득세를 갔다가 100분지4로 현재 취득가격으로까지 되어있는데……. 이 취득가격은 무엇으로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장차 취급하는게지? 여기에 대해서 재정위원회나 예결에서 관심이 없었든 것같습니다.

이 앞으로의 이 취득가격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다 두겠는지? 혹은 이 마이크 하나가 일천환이다.

그러면 내가 갑하고 을과의 계약서가 6백환이 되여있으면 그 계약서에 의거해서 인정할수 있는지? 없는지?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 지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재정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취득세에 비해서 말씀 하면 과거의 실례를 보면 대개 건축하는 사람에 대한……. 소건축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고 대건축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대개 이런 말씀을 하면 단상에서 말씀한것 같으면 대단히 어폐가 있는 말씀이니 특히 가격에대한 불편한 과세이기때문에 거기에대한 착오다 생각했기때문에 세원의 잡탈이 많다고치고……. 그러므로서 확고한 세원을 포착하는데에는 영세시민의 세원을 포착하는것보다 대수입자의 세금을 포착하는것이 원칙이라고해서 본 안건은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오히려 조그마한 열間이라든지 수무間이라든지 지는 그사람에 대해서는 하등의 소시민이기때문에 거기에대한 어떠한 혜택이 없고 빌딩 5층 6층 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강화를 하자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00분지6으로 과세한다는것은 모순이라고 보아서 현실의 고저의 대한 그 건축가격에 대해서 부가하는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본의원으로 안저서 본법에 대한것을 전적으로 찬동을 해서 시세원은 파탄에 들고 또는 전국적으로 지방세 재원은 파탄이 있기때문에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면서 재정위원으로 앉아서 대단히 좋다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다른 질의가 있읍니까?

(「질의하나 하겠읍니다」하는이있음)

○김석근 의원; 다시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재정위원회의 이중구의원의 말씀 잘 드리겠읍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다른점에 있어요. 저는 이 본법을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세원 포착하는데 100분지4하고 그대로 막연히 두게되면 그야말로 세무서 혹은 구청의 그 세무 담당하는 사람 책상에 는 열을 질것입니다.

저녁에 요리집이 터지고 점심에 음식점이 터저요.

이것을 방지하는데에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과같이 가령 마이크 하나가 있다. 이것이 1천환의 시가가 ○한데 이것이 6백환으로 계약이 되엇다 그러면 이런 때의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건축만 하드라도 한평에 4만환 5만환 드는것도 있을것이라 그말이에요.

그리고 가령 기업주가 업자의 계약을 했다고 할것같으면 그 계약서를 제시하게되면 그대로 인정될것입니다.

그러나 기성가옥의 매매 동산의 매매……. 결국은 매매가격으로 6백환이 드러왔을때에 이거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서 근거를 두느냐? 세국민을 더 내기위해서 여기에대한 방안을 생각을 하시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을 한사람은 혜택을 입은 사람은……. 세국민은 골탕을 먹었다 즉 이것은 사실의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부가하는 사람한테가서 이것을 「사바 사바해」 해서 낙착을 질려고 할거에요.

그러니 어느정도 사정가격이 되어있을것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사정위원회라는지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국에서 전반의 기안했을때에 안이 없으니까 대략 안을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행득;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로하고 질의가 게시

면 말씀해 주세요.
○이갑수 의원; 시방 김석근의원이 말씀하신 취득가격의 100분지4의 년부가격의 100분지6이라는 한계를 해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아니요」하는이있음)
가령 귀속재산이 현시가로 봐서 5백만환짜리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완전 취득가격은 이것이 백만환이다 이것이에요. 서류상 그러면……. 취득가격을 이것을 현시가 5백만환으로 보느냐? 정당하게 취득 백만환으로 간주하고 여기에대한 100분지4를 부과한것이냐? 요 말씀을 묻는것이고 제가 또한가지 이 년부가격에 대한것도 가령 5십만환에서 10년이라면 5백만환……. 10년에 5백만환이라면 먼저 이 5십만환에대한 100분지6이나 혹은 현시가가 5백만환짜리가 현 시가가 5천만환이 된다고할것같으면……. 그 현시가가 5천만환에대한 10년분의 년부가격 100분지6을 부과하는 것이냐?
요 한계를 재무국장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具喆會 의원; 본건도 김석근의원이 지적하는것이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율을 올린다고하는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정확하니 담세력의 자료포착을 해서 징수를 한다면 이러한 오늘날 세율을 올리지 않드라도 우리시 재정에는 결핍이 없을것이라고 하는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우선 예를 들어서 이 도축세가 있읍니다.
도축세를 제가 한번 이번 회계감사때에 나가봤에요. 가축보호법에 의거해서 가축시장에서 매매되는 가축은……. 소는 말이에요. 일두당 매도가격의 100분지1씩 파는사람과 매수자의

각각100분지1식을 가축시장에서 소개료로 받게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이 100분지 2에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 매매가격의 100분지2라고할것같으며는 이것이 실지매매가격에 100분지1이라고 하면 2십만환짜리라고할것같으면 1두당 가축시장소개료로 드러야한다. 이것이며 이것을 조금 싸게하자해서 실지와는 다르게 1두당1천만내외로해서 1천환 2천환식하고 십5만환짜리는 십만환 십3만환 십3만환짜리는 8만환 공문서를 위조를해서 싸게받고있다 이것입니다.

또 이것이 도살하는 소도 매매가격으로 의거해서 부과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실지와는 상이한 이러한 징수를 하지않으면 안되는것이요. 만약에 현재에 가축보호법을 현실과 맞는법으로 개정한다고 할것같으면 우리가 실지 그대로 축산조합에서 그대로한다고 할것같으면 시청에서 도살료를 받는것은 매매가격 실지 그것과 받는것은 인상가격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요금인상하는것도 우리가 작년도 예로서 우리가 작년 예산을 비추어서 세입이 얼마정도 집행되였느냐 사실에 징수가 부진했든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린다고해서 많은 금액이 징수되겠느냐 나는 이것은 현실과 역행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취득세 김석근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지금 여기에 소위 특별행위세에 있어서 개정을 요구했든것을 보면 요리점 유흥과 음식또는 숙박요금에 100분지60 이라고 이래놓았는데 이것은 실지 커다란 요리점에서 오히려 실지 상행위보다는 적은 수자의 부과가 갈는지 모른다 그것입니다.

왜야고할것같으면 김석근의원께서 말씀할것과같이 어떻게 하루저녁 불러서 호화찬란하게 교제를할것같으면 십만환내지

1만환으로 삭감되는 예가 비일비재할것입니다.

그반면 약소업자 이런사람들이 실지 1만환 2만환식 부과했다는 예가 아마 여기서 없다고 아마 재무국장이 단언을 못내릴것입니다.

또 여관과 정식 점심과 저녁만을 파는 순전히 식사대상을 받는것과같은 율로 동일가격으로 책정했다는것이 표시해 내놓지않는가 이것은 일목에서 나타나게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물론 시로서나 해당위원회에서는 심심한 조사를 했다하겠지만 과연 제가 지적한 이러한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 아마 제가 지적한것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 못할것입니다.

또 제가 도축세 회계감사때에 보아서 여기에 근거서류를 가지고 있는것이요. 이것을 당연히 취득세 실지 우리가 운영의 묘를 거두었느냐 이러한법에 의해서 편성할수있도록 율을 올리는것과 징수액을 편성했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가지고 있읍니다.

율대로 최대한도 올린다고할것같으면 최대한에 무능한 사람만이 피해를 입게 되지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구체적운영의 방안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이행득;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집행부에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아까 제가 설명한것이 불충분해서 또 지금 물은것같아서 좀더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하겠읍니다. 따 김석근의원께서 말씀한것을 형편상 먼저 해드리겠읍니다. 취득 가격에 100분지4 종전에는 등기가격에 100분지6이었읍니다.

등기가격을 100분지6으로 받을 징수에서는 실지 매매가격

이 예를들면 5백만환 수량이라고하면 등기매매계약서에서 한 2백만환으로하고 또 등기가격 약2백만환정도로……. 사실은 5백만환 가격이 되었는데 등기에서는 2백만환 백만환정도로 밖에 등기를 하지않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등기가격은 어떻게되었든지 실지에 매매에 10분지6으로 하자는것은 너무나 과하고 하니까 개정에 설이 있읍니다.

그리고 년부가격은 그 보통재산에 취득가격보다 시가보다 싸게부담을 해야할것입니다. 작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정하는것은 법에 정신입니다.

그리고 10분지4로 줄이기는 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등기가격100분지6보다 현시장……. 더많이 싸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석근의원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강의원께서 가옥세가 전에 9십전하였느나 6십전하였느냐 이런것을 물으셨읍니다. 차량세에 세법개정에 의하면 100분지300인데 100분지200으로 되였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읍니다.

가옥세에 말씀을 드린다고 할것같으면 종전에는 9십전으로 되어있었읍니다.

9십전으로 되어가지고있는데 내무부장관에 준칙에의해서 6십전으로 되여있읍니다.

이내무부장관 준칙 한도까지 6십전으로 받고 있었읍니다. 또 차량세를 말씀드릴것같으면 별표5호에 세액에 100분지100이었든 것이 세법 개정100분지300 이것은 내무부장관에 준칙에의하면 100분지200으로 되어있읍니다. 이것은 역시 내무부장관에 준칙에한도까지 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하기로 정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자치 단체에서 부과하기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의 준칙이라는것은 법적으로 마음대로 변경하지 않느냐 하는 사실은 내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드라도 그 실정에 따라서 다소 변경은 합니다.

차량세로 말씀드리면 100분지 100을 하였든것을 한꺼번에 100분지300으로 된다고하면 전의 3배를 물게되니 너무과하다.

백정도로 하자는것이 내무부장관의 준칙의 취지입니다. 전에 가옥세9십전하든것을 6십전으로 한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단체로서 내무부장관의 준칙에 의해서 한번 가감 아니 감해가지고 100분지 200으로 한것을 100분지 150이라든지 혹은 100분지 180으로 할수있느냐 가능 할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법개정의 이번세법이라는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보강을 위하여 개정한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개정의근본 정신이라는것을 생각할적에 이것을 감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서울시의 재정형편을 보드라도 이것은 감액을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다른 시의 비교할적에 「바란스」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의 비교해서 「바란스」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세가지 다 받는데 서울시만이 별도로 받지않는다는것은 저희들의 행정 참 저의 공무원으로서 과거의 경험이나 혹은 상식으로 보아서 자치단체의 살림사리는 좀더 양심적으로 보아서 감액을 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우 의원; 요전에 특별히 조례개정안이 나오게되였는데

사실 말씀하자면 이 가옥세 여기에 대해서 1환8십전으로 했읍니다. 이것은 종전에 2환으로 해가지고 왔고 또 집행부에서 얘기가 부산 대구 대전등 대도시에서는 전부 22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환식을 꼭 받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위원회에서 생각할적에 이것은 채무중에 제일 건실한 확실한 세수입입니다. 가옥세라는 것은 그래서 그럼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뜸 2환식은 불가능하며 이것은 무리하지않을까 그래서 결국 1환8십전으로다가 정한것입니다.

사실 말하자면 도축세니 뭐니 뭐니 무슨세보다도 이것이 수입 세원으로 확실한것입니다. 그러고 도축세에 대해서 이 소한마리를 잡는데에서 내가 들으니가 만6 7천환 돈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것을 올려 안줄것같으면 안되니 결국 올린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물가지수의 좀 비교해서 올리면 좋지 않을까 전에 2천환 받든것을 천환올려가지고 3천환한다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심심히 고려해서 한 결과 100분지 50으로 했든것입니다. 차량세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국장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100분지300을 재정경제 위원회에서 100분지 150으로 했읍니다.

결국 이것은 100분지 300으로 받는것은 「택시」에관한 건 뿐입니다. 실정을 알고보니 「택시」라는것이 그렇게 우리들이 상상하는것과 마찬가지로 호화찬란하고 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시청앞에도 몇 부로카가 며칠 운영해 가다가는 자빠지군 합니다. 매일 결손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실정을 참작해서 그 100분지 150으로 한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국장도 말씀이 근본 개정취지가 이번에 지방재원을 갖다가 확보하니 위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재원의 정신으로 보아서는 그렇겠지마는 너무 지방재원을 갖다가 보강한다 보강안하면 자빠진다는 경우를 우리가 상상해야 합니다.

그점으로 말미아마 그점도 생각했고 또 취득세뿐만 아니라 부과세에 대한 이런 해석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아까 이갑수의원께서도 말씀 했읍니다마는 지방세는 당연히 지방에서 받어야 할것이고 작년에 세로서 3십여억환을 중앙정부가 받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것을 너의가 조금 이대로만 하지않고 깎았느냐 이런말씀은 상급 지도관들이 할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현실을 무시할수가 없어요.

그렇다고하면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다 할수없는 우리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결국이안이 세안이 되었읍니다.

원안이 집행부에서낸 안이될것이고 지금 재정위원회에서낸안이 하나있고 예결위원회의의안이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당장결정을지어가지고 2독회에넘어가든지 해야될것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조영석의원말씀하세요. 질의입니까?

○조영석 의원; 조영석이올시다. 또한가지질의할려고 지금 나왔읍니다. 종전의조례를보면은 이면허세라는것이 일종부터서6종까지에면허세가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면허세가세법개정에따라서상당히많이 이동이 된것같습니다. 그런데 세법중에서 종전대로말씀드린다고하면 종전면허제3종면허세중에서 건축이라는것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건축면허세를 그야말로 방한간을 지는데에도 허가

에도 8천4백환의 세금을 내야만하는 세무행정을 해왔읍니다. 그런것이 세법개정에따라서 3종면허종액에서 이것이 삭제가 되었읍니다.

삭제가되었는데 당무자의 말을들으니까 개정된 면허세6종8항으로 이것이 포함되었다는 이러한 말씀 지금 들었는데 3종개정된세법에의해서 3종면허세중에삭제가 되어가지고 6종8항으로 이것이 根管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법의근거가 무엇이냐 물었드니 이것은 내무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문이 되는것은 아까 재무국장의 답변중에서 왕왕히 내무부 준칙이라고하는것을 운운했읍니다. 그런데 내무부준칙이라고 하는것이 사실상 법률상 어떠한 효력을 가저오는것인가 본의원은 잘 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만일 이 조례의 내무부준칙과 이것이 상충이 될적에는 그 법률효력이 어떠한것인가 이것을 한번 규명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해서 이점을 시조례의 준칙 상충될적에 어느것이 법률적으로 더 강한효력이 되는것인가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면허세중 제6종 8항에 같 기타면허세라고하는것에 건축이라는 면허세를 포함시켜다는 법적이유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첨가해서 한가지말씀드릴것은 이건축에대한 면허세가 과거의 예를들면 어떤 사람이 새로 건축하는데 5층6층의 層집을 증축을 했어도 8천4백환 온돌방 한간 증축을해도 8천4백환 꼭같은 세액을 냄니다.

이것은 사실상 커다란 모순된 세무행정을 해왔읍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건축에대한 면허세를 말살한다고 하는데에 찬동합니다마는 꼭 필요가 있어서 부과한다고하면 실정에의해

서 적절히 부과하는방법이 필요하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건축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해야되겠다는 시재정상 형편이 있다고 할것같으면 부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시한번 시조례로서 부과하는 방법을 공정하게 개정하는것이 어떨가 이것을 내무부 준칙이라고 해가지고 채용하는 조례가 그 준칙을 능가 할수 없다는 이러한 해석이 내려지면 별문제려니와 만일 조례가 준칙보다 법적 효력이 강하다고 하면 이 점은 재고할 여지가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당국에 질의하니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행득;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영석의원께서…….

(의석에서 ○具喆會 의원: 제가한것을 먼저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계속) 그것은 제가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읍니다.

건축의 종전에 3종에 있어야하는데 이것이 3종에 없으니까 부과대상이 안되지않느냐하는 말씀이신데 저의들 해석은 기타의 6종에 이것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부정문구가 없는한 그것은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무부준칙과 그강력의 정도가 어떠냐 물론 조례라고하는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입니다. 그러면 준칙은 어떤것이냐 내무부장관이 하부기관인 지방관청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한테 어떤 표준을 제시한 한 공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준칙이라고 하는것은 법적효력은 조례보다 물론 약합니다. 조례에 1환8십전이라고 만일 개정이 된다고하면 내무부준칙이 어떻게되었는지 그것은 시민하고 직접 관계가 없읍니다.

관청끼리하는 공문에 불과하고 이러한 법령의 권력을 밝히기 보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내무부의 준칙이라고하는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가 있읍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준칙에의해서 전모가 고루어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10개자치단체에9개자치단체는 준칙에의하고 1개자치단체에서 준칙과 다른 조례를 정한다면 내무행정 전반으로 보아서 차질을 조래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타국에 있어서는 그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세정도 정할수있게 되어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안되어있읍니다.

그지방세법에의해서 정하게되어있고 또 그 세의 부과율이라든지 이런점은 내무부준칙으로서 통일이 되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감액을 하는 이외에는 도저히 감액하는것은 곤란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부의장 이행득; 질의답변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강을순 의원; 강을순입니다. 자꾸 여러번 나와서 죄송합니다. 가령 본건 심의에있어서 충분한 토론과 심의가 되었으리라고 또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발언을 요청하신분도 많이 게실줄 압니다 마는 특히 오늘 너무 오래인시간을 심의한무어도 있고 또 그동안 예결위원회의 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해서 본건을 질의종결을 동의하고 겸해서 제가 동

의를 하고저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해서 제1독회 생략하고 제2독조에 있어서……. 무엇 다른 조항은 상치된것이 없읍니다. 제2조4항에있어서 가옥세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의 원안대로 1환5십전으로할것과 또한 6항에 있어서 도축세에 있어서는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대로 2천5백환 또한 마 한개에 있어서는 8백환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8항 차량세 100분의150으로 해줄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청이요」하는이있음)

(「의사진행이요」하는이있음)

○부의장 이행득; 말씀하세요.

○이갑수 의원; 이것은 의사 진행상 모순이 있는것입니다. 종결동의를하고 만일에 종결동의가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 두가지 세가지 한테 넘어가요? 종결동의로 그처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시나와서 독회를 생략하는것은 좋으리라고 믿읍니다.

○부의장 이행득; 이의없읍니까?

(「없읍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면 종결되고 제1독회로 들어갑니다.

○이갑수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이 1독회 2독회를 생략한다고 하신것이니깐 저도 동감이 올시다.

예결위원회의 원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타당치 않다고하면 여러가지로 논제가 많이 나올것같아서 예결위원회의 원안대로 해주실것을 동의하는동시에 1독회 2독회 생략하고 3독회로 넘겨서 운영 위원회로 넘겨주실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하는이있음)
○부의장 이행득; 말씀하세요.
○강을순 의원; 이갑수의원께서 의사진행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여러의원께 제가 양해를 구했든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며는 종결동의로 끝낼려고 했든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다고하셔서 제가 동의까지 한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한 이제 이갑수의원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개의의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즉 말하자면 타협안입니다.
이것을……. 어떻습니까? 동의집에서 받아주시면…….
(의석에서 ○이갑수의원; 받겠읍니다.)
(「재청」 「삼청」 하는이있음)
○부의장 이행득; 자세히 말씀드리면 가옥세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으로 하고 도축세는 재정위원회의 안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하는이있음)
○김주흥 의원; 이제 강의원의 절충안에대해서 제가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예산심의에가서 그 조처로 말미아마 2천6백9십만환의 세입에 삭감조처가 있어야 될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있어서 상당한 액이 있으니까 조처의 길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을 여러분께서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행득; 이갑수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이있음)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로서 산회 하겠읍니다.

(17시 20분 산회)